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현안분석

- 부동산시장의 최근 동향과 부동산관련 조세정책방향
-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
-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한국조세의 이해

재산과세(Ⅲ) : 상속세 및 증여세

정책토론포트

경제위기하의 재정정책방향

정책흐름

199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재정통계

OECD 회원국의 법인소득세 비교(Ⅱ)

C · O · N · T · E · N · T · S

권두칼럼	2	경기부양과 재정적자 확대 / 趙潤濟
현안분석	6	부동산시장의 최근 동향과 부동산관련 조세정책방향 / 魯英勳
	20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 / 韓道淑
	34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 金正勳
한국조세의 이해	46	재산과세(Ⅲ) : 상속세 및 증여세 / 韓相國
정책토론폰리포트	53	경제위기하의 재정정책방향
경제단상	62	달힌 문 앞에 선 고학력 실업 / 김동철
	64	부정부패와 경제성장의 함수관계는? / 金龍大
문화기행	66	서원을 찾아서 : 이올곡 선생을 배향한 파주 지운서원 / 李 濬
정책흐름	70	199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재정통계	106	OECD 회원국의 법인소득세 비교(Ⅱ)
이런 의견 저런 생각	110	목적세 폐지 논란 외

경기부양과 재정적자 확대

趙潤濟 / 서강대학교 교수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폭을 대폭 늘리겠다고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건전재정 또는 균형예산에 집착해 오다 보니 경기조절작용을 상당히 등한시해 왔던 면이 없지 않다. 특히 개방경제하에서는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경기조절 수단으로서의 한계가 커지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조절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의 재정팽창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되는 면도 있다.

첫째, 현재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과 투자, 소비의 급격한 위축은 단순히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만 설명하기 어렵고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것도 그 실효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위축의 수렁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은 경기상황이 단순히 경기순환과정에서 심화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용의 위기에서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충격으로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순식간에 지극히 비관적으로 바뀐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우리나라와 같이 급격한 외환위기를 맞았던 나라들은 예외 없이 우리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축과 오랫동안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인도네시아는 금년도에 마이너스



12% 이상, 태국도 마이너스 10%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1994년 말 외환위기를 맞은 멕시코도 그 다음해에 약 마이너스 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외환위기를 맞고 경제구조조정을 시도하였던 동유럽 국가들도 1990년대 전반 내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최근 러시아 경제는

그 수렁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급격한 경기위축과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이 IMF 프로그램하에서의 지나친 긴축 때문이라고 비판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이들의 경제위기는 긴축재정이나 통화정책에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경제 참여자들의 얼어붙은 마음에서 온 것이다. 이제껏 실시해 온 경제방식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을 때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하고 새로운 방식이 정착될 때까지는 모두 방어적인 투자와 소비행위를 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상황에서는 빨리 새로운 시장질서를 형성하는 것만이 경제회복의 길이 될 것이다.

멕시코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경제를 회복하였다고 하나 1994년 말의 외환위기는 단순한 요인, 즉 환율방어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비롯되었고 또한 그 당시 외환위기를 맞은 나라도 멕시코밖에 없었기 때문에 멕시코 환율의 대폭적인 절하는 멕시코 수출의 경쟁력을 크게 늘리

오늘날과 같은 국내외 경제환경하에서 외환위기를 가장 확실하게 벗어나는 길은

바로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에 의한 외환보유고 증가와 단기외채의 축소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재정팽창은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고 대외신인도 회복을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회복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구나 미국경제가 계속 호황인 상태에서 멕시코 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멕시코 경제도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1980년대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약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그 당시에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외환위기를 맞고 대폭적인 환율절하를 실시하였으며 미국경제 또한 불황의 늪 속에 빠져 있었다. 결국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는 그 후 재정팽창과 재정긴축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수차례의 외환위기를 추가로 맞게 되고 결국 외채탕감에 의해서 경제가 정상화되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재정팽창정책도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인플레이와 환율,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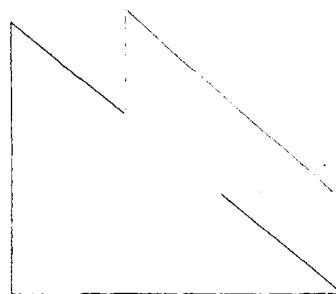
둘째, 현 시점에서 재정적자의 과도한 확대는 자칫 앞으로 우리 경제가 재정적자의 악순환의 굴레로 빠져들게 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 금융부문의 부실은 엄청나다. 정부는 64조원으로 금융부실을 정리한다고 하지만 현재 금융부문의 부실은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64조원으로는 충분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금융위기를 맞은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한결같이 초기에 금융부실을 과소평가하고 사후적으로 두 배, 세 배의 자원을 투입하여 겨우 부실을 정리한 경험들을 갖고 있다. 우리 정부가 재정자금 투입을 통해 부실을 해결하려 한다면 정부의 총부채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이자지급만도 단일 세출항목으로는 가장 큰 지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사업 확대, 세 감면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는 우리 재정의 대외공신력을 낮추고 국제의 해외시장에서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림으로써 우리나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차입비용의 전반적인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과 같이 국제금융시장 환경의 시계가 불분명하고 우리의 이웃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브라질 등 경제취약국들이 속속 외환위기에 빠져드는 상황에서는 고통스럽더라도 보수적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과 같은 국내외 경제환경하에서 외환위기를 가장 확실하게 벗어나는 길은 바로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에 의한 외환보유고 증가와 단기외채의 축소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재정팽창은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고 대외신인도 회복을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회복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끝으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가 재정적자 확대를 추구하면서 그 이유를 IMF가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점이다. 필자가 알기에 여태까지 IMF가 재정적자 확대를 촉구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다. 그러나 IMF의 이러한 촉구는 일본경제의 앞날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도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나라이다. IMF가 이를 촉구한 것은 바로 일본경제의 위축이 미국과 여타국가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일본과 아시아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은 국내시장의 거품붕괴를 우려하는 미국과 유럽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처방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자 확대는 세수의 감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업대책, 금융부실 정리 등을 위해,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나치게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재정을 적자로 끌고 가기는 쉬워도 증세 등 다시 균형재정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은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이다. IMF

현안분석



1. 부동산시장의 최근 동향과 부동산관련 조세정책방향

魯英勳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2.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

韓道淑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3.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金正勳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부동산시장의 최근 동향과 부동산관련 조세정책방향



魯英勳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1. 서론

1) 먼저, 우리나라 경제에서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전국토지시가는 총 1,217조원(1996년), 건물은 358조원(1995년), 금융자산 총액은 2,306조원(1996년 6월), 상장주식시가 총액은 108조원(1998년 2월), 통화지표인 총유동성(M₀)은 700조원(1997년)으로 부동산은 자산형태별 분포에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 각 부문의 저축 및 투자 의사결정 그리고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지각변동과 같은 정도의 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가계나 기업 모두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 형태로 부(wealth) 및 기업 가치(worth)가 집중되어 있는 나라도 드문데¹⁾, 부동산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유동성 부족, 부실채권 급증, 전세파동 등 미증유의 경제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자산가치 급락에 대한 우려는 복합불황 및 공황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그간의 정책 대응을 통해 정부의 기본시각을 살펴보며, 향후 취해야 할 부동산정책 및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제들의 현상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나, 문제의 본질과 발생원인,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정부 내 부처들, 관련 연구기관들간에 상이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정책이슈로서 ① 자산디플레이 및 복합불황의 가능성 논란 ②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논란을 다루고자 한다.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II. 부동산관련 정책변화 내용

지난해 말 이후 발표되거나 시행되기 시작한 부동산 관련 제도의 변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전 국토면적의 37%에 달하는 토지거래신고지역은 전면 해제하고(1997. 12. 20), 33%에 해당하는 허가구역은 3.3%만 남기고 모두 해제함(1998. 1. 31).
- ② 일정규모 이하의 신축주택 취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함(주택시장 안정화대책, 1998. 5. 22).
- 향후 1년여 기간(1998. 5. 22~1999. 6. 30) 동안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5년 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5년 경과 후 매각시에도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 ③ 구조조정용 부동산매각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경제대책조정회의, 1998. 4. 14)으로, 금융부채상환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이 1999년 말까지 매각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취득세·등록세 및 부수되는 채권(국민주택채권 등) 매입의무를 면제하며, 취득 후 5년 내에 양도하는 자에 대하여 양도세를 50% 감면함.
- ④ 외국인 토지취득의 자유화 및 개방화를 위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4월에 개정하였고, 외국인토지법을 제정하여 금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며, 외국기업 임직원용 주택용지, 상업용지, 비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토지취득 제한을 철폐하며, 4월중 42개 개방제한업종 중 절반 정도를 개방하면서, 부동산임대업·분양공급업·골프장운영업 등 10개 업종을 개방하는 것임.
- ⑤ 1999년 말까지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의 전액 면제
- ⑥ 중도금 및 전세금반환 대출지원
- ⑦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주택은행의 매입자금 지원(7월 9일부터 세대당 3천만원)에 추가하여 중대형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면제: 전용면적 25.7평 이상이든 이하이든 주택규모에 상관없이 내년 6월 30일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되팔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함.
- ⑧ 분양권 전매 허용

우리나라처럼 가계나 기업 모두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 형태로 부 및 기업가치가 집중되어 있는 나라도 드문데, 부동산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유동성 부족, 부실채권 급증, 전세파동 등 미증유의 경제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적인 장이 부동산(시장)이라는 시각에서, 경제전반의 활동수준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부동산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III. 부문별 부동산시장의 현황과 정책방향

이상과 같은 부동산시장 대책들이 단기간 내에 급속히 성안되어 발표·시행되는 과정에서 개개의 정책들간의 상호유기적 연계성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나, 1990년대 토지공개념제도 시행 이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시각 변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다.

무엇보다도, 부동산시장의 동인(動因), 작동메커니즘의 변화에 발맞추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제도가 종합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지 등 부동산은 생산요소 및 자산의 한 형태로서 금융시장에서의 금리 등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금융부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즉, 부동산시장에서는 세제적 지원대책보다는 저당채권유동화제도 및 건설금융 등 수요자 및 공급자금융 지원대책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이는 최근 시행된 중도금 대출 및 전세자금 반환대출 등에 보인 호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적인 장이 부동산(시장)이라는 시각에서²⁾, 경제전반의 활동수준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부동산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금융 및 기업부문 구조조정, 외국인투자 촉진, 소득 대비 극심한 소비지출 위축 및 가계신용 급감, 부문간 자금순환흐름 등 모든 경제현상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부동산시장 내에서 가격결정메커니즘이 IMF체제 이후 변화하였다면, 이에 따라 감정평가 및 과세평가방법도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결국, 부동산은 지역성·부문성·비효율성이 강한 자산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생산요소로서, 주거서비스 제공 자산으로서, 수익용 자산으로서, 부동산시장의 전체적인 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한 후 개별 부동산별·지역시장별로 세부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내수 및 산업생산 등 일반경제활동의 부진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투자적 목적까지도 고려한) 구입수요보다는 (주거 및 산업용지 서비스에 대한) 임대수요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Nothing 'takes place' without taking a place - that is there is a spatial dimension to all economic activities, many of which need some kind of policy guidance through regulatory measures or a proper framework for market decisions." (OECD, *Urban Land Markets : Policies for the 1990s*, 1992, p. 13.)

1. 토지시장

최근 토지시장은, 기업의 자금난 및 구조조정용 매물이 증가하고 경기침체에 따라 신규투자수요는 감소하여 상업·공업용지를 중심으로 가격하락과 거래량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 상반기중 전국지가는 지난해 연말 대비 10.64% 하락한 반면, 토지거래량은 전년 상반기 대비 필지수 기준 18.3% 하락하였지만 면적으로는 8%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2/4분기중 지가는 9.49%,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필지수는 25% 감소하였지만 면적은 0.4% 상승하여 거래부진 속에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이 중 대도시지역 및 대지(주·상)·공장용지에 대한 거래격감 및 가격하락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거래주체별로는 법인간 거래필지수와 면적이 각각 전년동월 대비 224.4%와 104.8%씩 증가하여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토지매매가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개인토지의 법인매입은 27.5%가 감소,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업체들이 신규사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은 지가지수와 토지거래량의 1990년대 추이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1998년 2/4분기의 지가는 지가가 급등한 1989년 말보다는 높지만 1990년 2/4분기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거래건수는 명백히 분기별 계절 변동성(seasonality)을 보이거나 연간으로는 지가가 하향안정기에 있었던 1992~94년 기간중에도 100만건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으며, 1995~97년 기간중에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도 지가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현상을 보였다. 거래면적은 거래건수에 비해 비교적 뚜렷하지 않은 계절 변동성을 나타내며, 부동산실명제 실시의 효과가 실명전환기간 동안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기본적으로 나대지 등 미건축지는 토지의 용도별 수급상황에 기초하여 용도전환 등 부동산 이용규제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여, 고지가에 따른 요소비용 증대요인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2. 주택시장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 및 실업 등 소득흐름의 불확실성 증가, 그리고 상반기중

내수 및 산업생산 등
일반경제활동의 부진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구입수요보다는
임대수요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 및
실업 등 소득흐름의
불확실성 증가, 그리고
상반기중의 고금리로
구매력이 위축되었으나
전세 등 임대시장은
비교적 타격을 덜 받았다.**

의 고금리로 구매력이 위축되어 매매가격 하락 폭이 컸고 거래도 부진하였으나, 전세 등 임대시장은 비교적 타격을 덜 받았음을 알 수 있다. 7월중 도시주택 가격 동향(주택은행)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각각 0.4%와 0.7% 하락하여 9개월째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4월 이후 하락세가 둔화되었고,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은 각각 0.3%와 2.9% 상승하고 있다. 올해 3~4월에 급격한 가격 하락폭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연리 20~30%대의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여유자금에 대체자산인 단기 고금리 금융상품으로 이동하면서 주택금융기관으로의 재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한편 신규주택시장에서 초과공급이 지속되어 누적된 재고물량을 한 시점기준으로 집계한 미분양아파트 추이를 <표 1>과 <표 2>를 통해 살펴보자. 1995년 10월 말 주택시장안정대책 발표 직전 총 15만여채에 달하던 미분양주택은 안정대책상의 금융 및 조세지원의 효과로 1997년 말 현재 8만 8천채로 2년여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다가(▽44.3%), 다시 IMF 타격 이후 올해 3~4월부터 미분양이 급증하여 11만여채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미분양주택은 그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신규 공급되는 물량과 대비한 비율이 중요하고 신규주택시장 자체의 지역성이 강하므로 지역별 변동추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년 상반기 동안 예정 및 실제 공급물량이 하향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급증한 것은 특히 서울 및 경기도지역에서의 수요감퇴에 따른 분양실적 미진에 크게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미분양아파트 매입자금 지원과 분양권 전매 허용조치는 미분양 물량해소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토지시장과는 달리 주택시장은 거래가격 및 임대가격만이 조사될 뿐이고 각각의 물량은 통계적으로 조사되지 않고 있는데³⁾, 과거 주택시장의 패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주택매매가격이 급등하던 1987~91년 기간 중 전 도시지역 및 서울의 주택전세가격/매매가격지수의 비율은 1.2~1.3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반면, 주택매개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1992년 이후부터는 동 비율이 크게 증가한 패턴을 보인다. 즉, 주택매매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을 때는 전세가격이 비슷한 정도로 상승하여도 자본이득부분에서 투자수익률이 유지되었지만, 매매가격이 안정되는 시기에는 전세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아야 수익률이 보전되는 것이다.

3) 주택시장의 가격동향은, 1986년 이후 주택은행이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도시주택에 한정하여 공식 조사 발표하고 있다(전국 37개 도시, 3천여 표본주택). 주택유형별(종합·단독·아파트·연립), 규모별(대·중·소), 지역별(전국·서울·광역시·중소도시)로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주택전세가격지수를 발표한 시계열자료가 있다. 그리고 비공식적 통계로는 '부동산뱅크'지가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 및 전세가격을 10여일 간격으로 조사발표하며, 개별아파트별 특성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표 1〉 부문별 미분양주택 추이

(단위 : 호)

	1995. 12	1996. 12	1997. 12	1998. 3	1998. 4	1998. 5	1998. 6
계	152,313	109,637	88,867	97,182	101,779	108,399	112,155
민간		69,434	62,734	74,505	76,088	85,908	87,937
공공		40,203	26,133	22,677	25,691	22,491	24,218
(준공후)	17,919	12,304	7,949	9,081	9,205	9,179	9,636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금년 상반기 동안
예정 및 실제공급물량이
하향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급증한 것은 특히 서울 및
경기도지역에서의
수요감퇴에 따른
분양실적 미진에 크게
기인한다.

〈표 2〉 시도별 미분양주택 추이

(단위 : 호)

	1995. 12	1996. 12	1997. 12	1998. 3	1998. 4	1998. 5	1998. 6
계	152,313	109,637	88,867	97,182	101,779	108,399	112,155
서울	311	1,408	401	1,455	2,003	2,912	3,527
부산	15,733	15,031	10,005	10,942	12,146	12,056	11,506
대구	4,940	3,898	4,735	4,590	4,500	4,568	5,824
인천	8,301	4,911	864	1,767	1,632	2,643	3,045
광주	7,858	4,436	6,725	5,657	5,991	7,109	7,434
대전	4,922	265	2,041	1,994	2,005	1,938	2,064
울산	-	6,482	5,353	5,723	5,845	5,283	5,113
경기	26,381	17,576	10,906	16,893	16,991	20,043	23,369
강원	13,630	9,227	6,607	6,255	7,116	7,250	7,312
충북	10,860	4,066	3,475	4,002	4,533	5,139	5,063
충남	12,390	12,324	5,924	5,665	6,039	5,904	5,189
전북	7,471	6,478	7,607	7,101	6,442	6,949	6,672
전남	8,838	5,217	5,002	5,454	6,182	6,091	6,187
경북	8,511	10,169	8,750	8,826	8,953	9,451	8,800
경남	20,442	7,074	9,612	10,009	10,557	10,245	10,232
제주	1,725	1,075	860	849	844	818	818
수도권	34,993	23,895	12,171	20,115	20,626	25,598	29,941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주택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고, **불황기에도 기본적인 주거서비스는 수요되므로 가격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 4) 1997년 6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되었고, 수도권도 1998년 2월부터 민간택지에서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한하여 분양가 규제가 폐지되었으나, 공공택지상의 아파트 및 국민주택자금의 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국민주택)는 지역을 불문하고 자율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소형주택 의무비율만이 1월 1일에 폐지된 상태이다.
- 5) 호화 및 대형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상의 차등과세 및 중과규정은 그 판별기준이 면적 또는 (정부추계) 고시가액 기준 위주로 책정되어 있어 객관성 및 정확성이 부족하다. 특히, 국제적인 기준을 통해 보더라도 보유단계과세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므로, 재산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과표산출체계를 마련하여 과표 내에서 정확히 포착하면서 동일한 정률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실효성, 세수 등).

올해 1,2월중 공급예정 및 실제 공급물량이 전년동월 대비 43.6%, 76.7% 감소하여 입주시점인 2~3년 후에는 심한 주택공급 부족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견해는 전국의 신규주택 수요물량으로 매년 56만~60만호가 필요하나, 금년의 공급실적은 30만가구 미만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반면,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실물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있다. 즉, 우리 경제가 유동성 부족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데다 가계의 주택 구매력도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것이다.

자가전 임대전 주택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는 측면이 있고, 불황기에도 기본적인 주거서비스는 수요되므로 자산가치 저하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는 있지만 가격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즉, 저소득계층용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민영주택 이상 규모에서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분양가 및 소형주택 의무비율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제⁴⁾ 및 각종 규모별 차등과세제도⁵⁾를 모두 폐지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주택건설업계 등이 미분양 등으로 겪고 있는 자금난은 공급자금음 등을 통해 해결하고, 주택구입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양도세를 사용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택임대시장의 경우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전세제도 때문에 자금흐름의 애로가 발생하면서 세입자와 임대주간의 전세금반환분쟁이 발생하였으나, 법원이 신속한 당사자간 화해절차를 마련해 민사조정되도록 기본방향을 정하고 보조적으로 전세금반환대출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경기순환시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부동산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 사용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부동산시장 중 어떤 부문을 얼마만큼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부동산의 모든 부문(across the board)에 대한 수요진작 대책은 부동산시장을 과열(overshooting)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이후 4차례⁶⁾의 지가 상승 급등기에 기초한 「부동산 10년 주기설」은 일반경기 순환사이클에 후행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기존부동산에 대한 거래시장(changing hands) 활성화만이 아니라 산업연관효과, 토지 위에 이루어지는 건설투자

(improvements)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분양공급업, 임대업, 중개업, 감정평가업, 금융업 등 수많은 분야가 관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시장이 너무 침체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각종 지원시책을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신축아파트 중도금 용자(7월 시행), 신축아파트 구입시 5년간 양도세 면제 및 취득등록세 25% 감면(5월 22일 시행), 아파트분양권 전매(8월 27일 시행), 재건축아파트 규모별 공급비율 폐지(6월 15일 시행)하고,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5월 28일 입법예고 및 내년 시행 예정)). 그러나, 주택수요공급의 추이를 파악해 보면 1998년 상반기의 주택건설 실적은 총 16만 6,142가구(전년동기 28만 252호 대비 40.7% 감소)이지만 수요도 감소하였고, 미분양아파트도 11만가구 정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로 2001년까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만 해도 75만가구가 대기상태이므로, 향후 3~4년간은 물량부족으로 인한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은 없다고 예상할 수 있다.

과거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시행된 정책세제는 양도소득세(1975년 이전 :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주로 사용하여 왔는데, 세제적으로 기본(Baseline)이 잘못되고 세무행정적으로 실효성이 미약한 양도소득세를 정책수단으로 하여 부동산시장 불·호황기에 명목세율을 완화·강화하는 방식에서의 추진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3. 자산디플레이 및 복합불황의 가능성

우리나라의 부동산문제는 ① 고지가 ② 높은 지가상승률 ③ 소유구조의 불균등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중 ①과 ②의 현상에 대해 시장기본(market fundamental)이 지지하는 내재가치(자본환원화한 임대가치⁷⁾)는 얼마이니 그 이상은 부동산가격의 거품(bubble)이므로 인위적으로 거품을 걷어야 한다는 주장은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완전자본시장 및 완전정보 등) 가정하에 시장균형이 항상 유지된다고 보는 논리이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저량가치(貯量價値, stock value)로서의 부동산가격이 유량가치(流量價値, flow value)인 국민(내)소득(GDP)에 비해 매우 높은 현상(예, 1980년대 중반시점 프랑스 0.3, 캐나다 0.7, 미국 0.75, 일본 3.17, 한국 6.1)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상대적 비효율성에도

기존부동산에 대한 거래 시장 활성화만이 아니라 산업연관효과, 토지 위에 이루어지는 건설투자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분양공급업, 임대업, 중개업, 감정평가업, 금융업 등 수많은 분야가 관련된다.

6) 1969년의 48%, 1978년의 49%, 1983년의 18.5%, 1989년의 32%로 1983년을 제외하고는 연간(전국)지가상승률이 정점을 이루었던 연도가 대체로 10년 간격의 주기로 발생한다.

7) 어느 정도의 자산가격 상승이 시장의 기본적 여건 향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계산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은 미연방준비위의 내부 토론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There is no means of knowing beyond question how far this recent rise in stock prices represents excessive speculation and how far a readjustment of values to increased industrial efficiency ... and large profits."

**고도성장국가에서는
토지가 국부의
원천으로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후생 및 경제성과의
유인으로서도 중요하다.**

8) 일본 경제기획청은 매년의 국민경제계산(우리나라의 국민계정)을 발표하고 있고, 동 발표자료에 의하면 국민총자산(유형자산 및 금융자산)이 1992년 말 최초로 감소하였고, 국민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을 제외하고 유형자산과 대외순채권을 합한 국부는 1991년과 1992년 2년 연속 감소하였다.

9) 복합불황이라는 용어는 1992년 富峯義一교수가 저술한 『複合不況』, 中央公論社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는 일본이 겪고 있는 지속적 경성수지 흑자하에서의 경제불황을 경기순환적 요인과 스톱요인이 혼합된 복합불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野口悠紀雄 교수는 富峯가 '복합불황'이 왜 '복합'인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저자가 언급하는 것은 신용(자금)경색(credit crunch)에 의한 경기후퇴인데, 이것은 금융측면의 실물경제에 대한 일방적인 영향이고, 금융과 실물 양자가 상호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불황'이라고 칭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크게 기인하고 있다. Land Value/Wealth 척도는 경제안정기의 국가에서는 0.1~0.2 수준이지만, 일본 0.55⁸⁾, 우리나라의 경우 국부조사통계가 있었던 1987년 말 기준으로 0.7을 상회하는 등 고도성장국가에서는 토지가 국부의 원천으로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후생 및 경제성과의 유인으로서도 중요하다.

자산디플레(asset deflation)는 주식·부동산 등의 자산가격(asset price)이 하락하는 현상으로 과거 자산가격의 형성시 가격상승 기대에 의해 부풀려진 부분이 많았던 경우 버블붕괴(bubble bursting)라고 하며, 복합불황은 실물경제부문과 금융부문이 서로를 위축시키고 부실화하는 악순환 속에서 경제의 모든 부문이 불황상태에 빠져든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⁹⁾. 자산디플레→기업 연쇄부도→부동산매물 폭증→금융권 부실화→불황 심화→자산디플레의 악순환과정에서 거품소멸에 의한 가격폭락이 발생하는 원인이 반드시 실물경제부문에서 기인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실물시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가격 하락현상이 금융불황과 연계되어 다시 실물시장에 재충격을 줄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진다.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1988~90년의 지가폭등기 이후 1991년 2/4분기부터 지가상승률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1992년 2/4분기부터는 지가하락이 6년간 점진적으로 지속되는 과정에서 여신규제 등으로 대규모의 금융자금이 부동산부문에 유입되지는 않아 자산디플레의 발생원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¹⁰⁾.

둘째, 미국과 일본에 있어서는 구입부동산에 대한 저당대출(mortgage)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반용도의) 담보(collateral)대출이므로, 전자의 경우가 부동산가격의 하락 및 cash flow management 애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담보가치 이하로의 부동산가격 하락 및 이에 기인한 부실자산 급증 가능성은, 공시지가의 시가 대비 비율(70~80%)과 담보평가액의 공시지가비율(70~80%)을 감안할 때 기존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부동산의 가격이 35~50% 하락하는 유형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우려할 필요가 있으며, 공시지가 조정에 1년여의 시차가 존재하여 완충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

결론적으로, 외국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 폭락이 단기간에 발생하였던 반면 우리나라는 외환 및 금융위기 훨씬 이전에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발생원인도 기업대출의 부실화와 금융시스템의 기능 저하에서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대처방안으로는 외국에서의 교환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매각전담회사가 신속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처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손실액을 줄이는 첩경일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RTC는 부실기관소유 3천억달러 상당의 부동산매각업무를 전담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부실채권 정리기금 운영을 위한 부동산매각은 성업공사가 담당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정리기금은 한국토지공사 등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이원화하지 말고, 매수세력의 확인, listing 서비스, 판매 가능한 형태로의 상품개발(분필, 용도변경 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일원화된 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매수 여력이 있는 수요자는, 해외의 부동산 개발투자업자, 정부, 가계부문의 순일 것이다.

IV. 부동산관련 재산과세 개편안

현 경제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부동산유형은 소비·생산 또는 수익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제공하는 부동산부문인 산업용지, 상가, 주택 등이고, 나대지나 농림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에 따른 토지공급 확대라는 경제구조조정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이 부문에 대한 거래 활성화조치는 필요성이 적다고 생각된다. 최근 주택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특성(전세 및 분양제도)을 감안할 때 수익성 없는 지역에 비인기 평형에 대한 주택자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적 지원은 무리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택임대가격을 반영하는 전세가격은 주택매매가격의 1/3~1/2 수준의 범위 내에서 형성되어 왔는데, 이를 월세 임대주택제도가 보편화된 서구와 비교할 때 임차자는 주택가격의 기회비용 이하에서 주거서비스를 제공받는 셈이다. 그 차액에 해당하는 실제투자액에 대한 기대가격 상승분의 비율은 주택투자에 대한 예상수익률(=기대가격상승률/(구입가-전세보증금))이 된다. 따라서 가격상승기에는 전세가가 매매가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는 반면, 가격안정기에는 전세가가 상승하는 현상은 일종의 자산시장 수익률균등화 재정조건(arbitrage condition)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임대방식인 전세제도는 민간자본에 의한 주택투자수익률을 가격상승으로 보전해 주는 메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이 하락한 것은 기업대출의 부실화와 금융시스템의 기능 저하에서 기인한다.

10) 1980년대 말의 일본이나 현재의 미국과 같이 경상수지 흑자에 기인한(해외부문으로부터의) 유동성이 금융부문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대규모 유입되는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1980년대 말에 나타났으나, 외국에서는 바로 자산디플레이가 발생하였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정점이었던 1991년 이후 1997년까지의 6년간 하향조정세를 겪어 실질지가는 연평균 6.4%(=-1.4%-5%)씩 하락한 셈이다.

11) 1998년 상반기 부동산 유형에 따라 거래시장가격 하락폭이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최소 10~20%는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격하락이 급속히 진행되던 상반기중에 대형 은행·보험회사들은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담보가치 하락 정도를 점검한 후 감정평가액 대비 대출한도 비율을 하향조정하면서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추가담보요청 또는 대출금 일부상환을 요구하였다.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금년도 거래가격 하락분이 내년도 공시지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하향조시되는 시점에서는 또 한번의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수요자용 주택에 대한 각종 세부담 경감을 통해 주택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저하된 주택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다소 보전해 주는 정도의 세제개편으로 족하다.

커니즘에 의해 원활히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큰 폭의 주택가격 상승이 2~3년 내에 예상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는 주택부문의 민간자본유입 여력 및 매력에 있어, 양도세 등의 조세혜택을 통한 정책적 지원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1. 주택관련 세제개편방향

실수요자용 주택에 대한 각종 세부담 경감을 통해 주택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저하된 주택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다소 보전해 주는 정도의 세제개편으로 족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과거 주택이기만 하면 무조건 가격상승이 예상되어 주택수요가 항시 대기화하던 상황에서 추진되었던 총량적 공급증대정책에서 자가거주할 주택에 한해 구입수요를 증대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즉, 자가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구입수요를 증대시키나 임대용 주택투자에 대해서는 차등과세하는 방법이다. 기본방향으로서, 주거용자산은 가계의 저축이 다년간 축적된 부의 주요 형태이고, 주거용자산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대우는 저축 및 투자결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중시해야 한다.

먼저, 거래단계에서 부과되는 등록세·취득세는 주거주주택에 한해 특별감면을 하고(예, 본세 세율 합계 5%→3% 이하, 부가세율 합계 0.6~0.8%→폐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시켜 거래비용을 경감시킨다. 둘째, 보유단계에서 부담하는 주거주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0.3% 이하의 분리과세로 경과한다. 자본이득과세 분야는, 장기적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주거주주택 대체취득에 대한 일정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며(international tax harmonization), 정책세제로서의 지원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주택저당대출제도와 관련하여 주택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또는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을 통해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2. 기타 부동산시장 대책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개방을 통해 외국인의 매입수요를 증대시키고 종합부동산개발기법을 흡수하여야 하는데, 1998년 4월부터 외국법인의 부동산임

대업 및 분양공급업에 대해 전면 개방조치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외국 부동산투자업계의 시각에서 우리나라에만 특이한 거래관행·가격산정방법·거래단계 세 부담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중개수수료를 거래쌍방이 부담한다거나, 취득세·등록세로 6% 정도를 부담한다거나, 비업무용 토지제도 등은 외국인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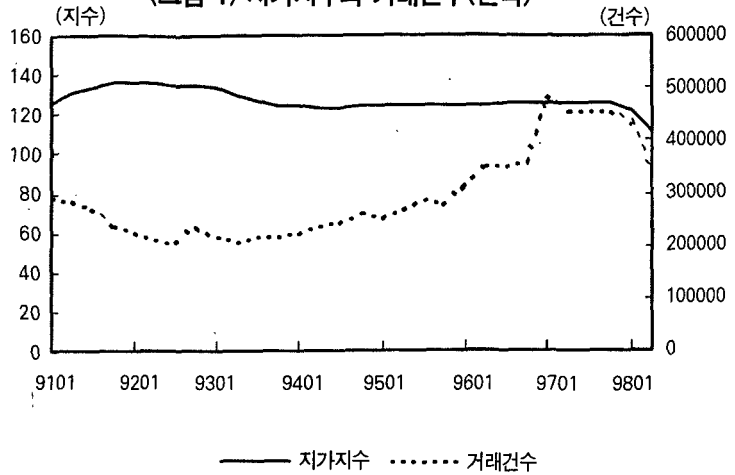
둘째, 부동산의 증권화 및 부동산서비스업의 제도적 육성 등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살펴보자. 감정평가업, 중개업, 컨설팅업, 설계·감리 등 엔지니어링업 등 부동산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종간 겸업을 허용하며, 토지 등 매매업자에 대해서도 중개업(brokerage)으로서의 순기능이 있음을 감안하여 투기활동자로 분류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업활동 후 사업소득을 납부하도록 하여 제도권 내에 흡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감정평가업의 경우 현행 감정평가시장 내의 한정된 공적평가수요(공시지가, 보상수요 등) 업무 확보에 치중하여, 민간부문에서의 감정평가기법의 발전 또는 개발 등을 통한 부동산의 가치증대 활동을 등한히 하여 부동산시장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서비스의 일부분으로 감정평가업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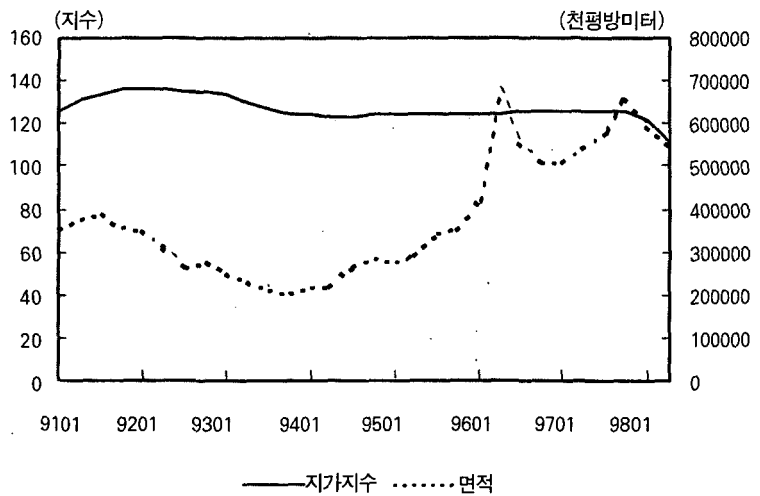
셋째, 부동산등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행의 등기공동신청주의도 좋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당사자간 위임을 허용하고, 등기권리자인 매수자는 본인 자격으로 그리고 매도인의 위임을 받은 부분은 위임받은 사람 자격으로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여 등기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등록세를 지속적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 준 후 여기에서 과세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KDI

외국 부동산투자업계의 시각에서 우리나라에만 특이한 거래관행·가격산정방법·거래단계 세 부담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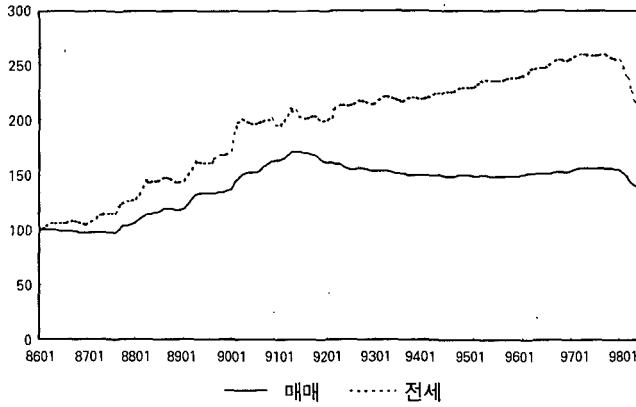
〈그림 1〉 지가지수와 거래건수(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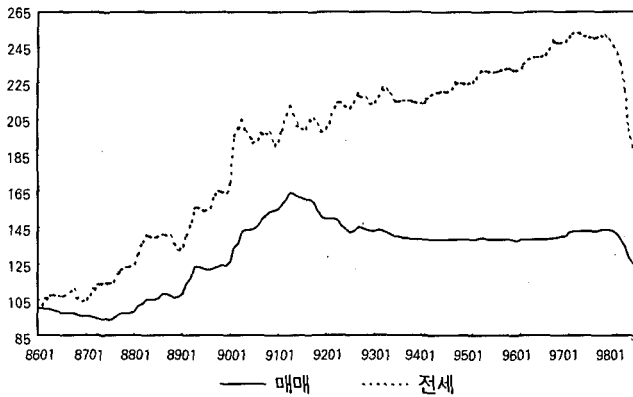
〈그림 2〉 지가지수와 거래면적(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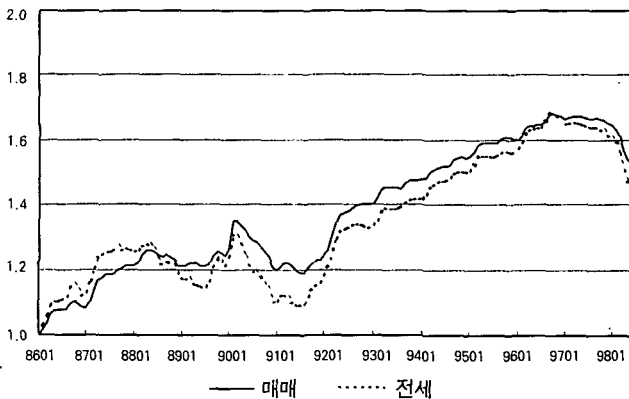
〈그림 3〉 전 도시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지수



〈그림 4〉 서울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지수



〈그림 5〉 전 도시 (주택전세가격지수/매매가격지수) 변동추이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



韓道淑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외국인투자는
원금상환 및 이자부담 없이
외국자본을 장기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의 효과도 수반한다.

1. 서론

최근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인해 경험하고 있는 IMF사태는 과도한 대외채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외채무를 대폭 축소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대외채무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는 수출증대를 통한 외화획득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외자유치를 들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원금상환 및 이자부담 없이 외국자본을 장기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의 효과도 수반하고 있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의 도입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투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윈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투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 이외에도 생산요소의 가격과 노동시장의 탄력성 및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등도 외국인투자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이러한 부문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외국인투자의 동향과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외국인투자촉진법안」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최근 지적되고 있는 외국인투자 관련 문제점과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국내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당분간 외국인투자의 급증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I.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998년에 들어와 IMF사태의 영향으로 1월에 최저치인 1억 3천만달러의 투자액을 기록한 이후, 7월에는 12억 3,500만달러의 투자를 나타내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8월에는 투자액이 4억 700만달러로 급격히 감소하였다(〈표 1〉 참조).

〈표 1〉 1998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금액	130 (-87.5)	199 (53.1)	243 (22.1)	567 (133.3)	659 (16.2)	663 (0.6)	1,235 (203.4)	407 (128.7)
건수	86 (-30.6)	87 (1.2)	135 (55.2)	107 (-20.7)	137 (28.0)	126 (-8.0)	94 (-25.4)	97 (-3.0)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도 대비 증감률임.
 자료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1998. 9.

금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한 데에는 3월 이후 활발해진 M&A상담과 외국인투자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및 상반기중의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세 그리고 각종 외국인투자 활성화 대책이 일조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금년 8월 들어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감소세에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으나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과 함께 국내 노동시장의 탄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국내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당분간 외국인직접투자의 급증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의 외국인직접투자 방식을 살펴보면 종전과는 달리 M&A방식에 의한 구

최근의 외국인직접투자 방식을 살펴보면 종전과는 달리 M&A방식에 의한 구주취득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8년 상반기중 M&A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금액은 총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의 28.4%를 차지하였다.

주취득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8년 상반기중 M&A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금액은 총 110건에 6억 9,800만달러로 동 기간중 신고수리된 총 외국인투자금액의 28.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1997년의 10%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 참조). 또한 투자금액면에서도 금년 상반기중 투자신고된 1천만달러 이상의 대규모투자 61건 중 24건인 39.3%가 M&A방식에 의한 투자로 나타나고 있어 최근 외국인에 대한 주식매각에 의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표 2〉 외국인직접투자자에 대한 기존주식취득금액 비율

(단위 : 백만달러, %)

	1997년	1998. 1~6	1998. 1~8
총 외국인투자(A)	6,907	2,461	4,103
기존주식취득(M&A)(B)	698	698	930
(B/A)	10	28.4	22.7

자료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1998. 9.

금년 8월까지의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를 살펴보면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4억 900만달러로 1997년 동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미국과 EU로부터의 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중·소규모의 투자와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지분의 인수가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표 3〉 주요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1997. 1~8	1998. 1~8	증감률
일 본	164	409	149.4
미 국	2,114	1,591	-24.7
E U	1,678	1,604	-4.4

자료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1998. 9.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를 살펴보면 제조업부문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 8월까지의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360건에 24억 3천만달러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의 59.2%를 차지함으로써 1997년

의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인 33.7%에 비해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표 4〉, 〈표 6〉 참조).

제조업부문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 8월까지의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의 59.2%를 차지하였다.

〈표 4〉 외국인직접투자의 연도별 제조업투자 비중

(단위 : %)

	1995	1996	1997	1998. 1~8
투자비중	45.5	60.3	33.7	59.2

자료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1998. 9.

〈표 5〉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의 연도별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1994	1995	1996	1997	1998.1.1 ~7.31	누 계 (1962.1 ~1998.7)
외국인투자	신고수리 기준	1,317 (26.1)	1,941 (47.4)	3,203 (65.0)	6,971 (117.6)	3,696 (-24.1)	28,336
	도착기준	991 (36.1)	1,357 (36.9)	2,308 (70.1)	3,086 (33.7)	1,058 ¹⁾ (-4.9)	17,823 ²⁾
해외투자	신고수리 기준	3,581 (91.0)	4,946 (38.1)	6,218 (25.7)	5,814 (-6.5)	2,178 (-33.6)	31,948
	도착기준	2,299 (82.2)	3,068 (33.4)	4,221 (37.6)	3,011 (-28.7)	1,427 (-36.9)	20,680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1) 1998. 1~6 도착기준임. 2) 1962. 1~1998. 6 도착기준임.

자료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1998. 9.

〈표 6〉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 백만달러, %)

	외국인투자					
	1962~1997		1997. 1~7		1998. 1~7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제 조 업	12,958	52.6	1,294	26.6	2,207	59.7
서 비 스 업	11,566	46.9	3,559	73.1	1,332	36.0
기 타	116	0.5	17	0.3	157	4.3
합 계	24,640	100.0	4,870	100.0	3,696	100.0

자료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1998. 6. 30.

외국인투자의

개방도를 상대평가한

최근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의

개방도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다.

2.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와의 비교

우리나라와 아시아 주요 경쟁국과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를 비교하면 필리핀을 제외한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이는 기업활동을 위한 우리나라의 투자환경¹⁾이 이들 경쟁국에 비해 열악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방도를 상대평가한 최근 조사²⁾에서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개방도(17.4%)는 태국(57.3%)이나 말레이시아(21.1%)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중남미국가들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

〈표 7〉 아시아 경쟁국의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달러)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필리핀
1982	69	1,397	-	225	430	191	16
1983	69	1,261	-	292	636	350	105
1984	110	797	-	222	1,258	401	9
1985	234	695	-	310	1,659	163	12
1986	460	489	-	258	1,875	263	127
1987	616	423	-	385	2,314	352	307
1988	1,014	719	366	576	3,194	1,105	936
1989	1,118	1,668	539	682	3,393	1,776	563
1990	789	2,332	596	1,093	3,487	2,444	530
1991	1,180	3,998	1,388	1,482	4,366	2,014	544
1992	728	5,183	2,117	1,777	11,156	2,113	228
1993	588	5,006	2,887	2,004	27,515	1,804	1,238
1994	809	4,342	4,071	2,109	33,787	1,366	1,591
1995	1,776	4,132	7,200	4,346	35,849	2,068	1,478
1996	2,325	-	8,538	6,194	40,180	2,336	1,517
1997	2,844	-	-	4,677	44,236	3,029	1,253

1) 1997년 8월에 Far Eastern Economic Review에서 실시한 아시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아시아 18개 국가 중 하위권인 14위로 나타나고 있다.

2)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8, 5, 7.

주 : 1) 외국인직접투자는 'Direct Investment in Reporting Economies'의 수치임.

2) 베트남의 수치는 한국수출입은행, 『베트남 투자가이드』의 것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베트남 투자가이드』, 1997, 6.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8.

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남미국가들은 1980년대 말 외채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장려하였으며, 최근에는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와 MERCOSUR(남미공동시장) 등의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8〉 참조). 이 같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는 외채를 debt-equity swap으로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IMF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통합과 남미공동시장의 출현은 역내시장 진출을 위한 역외기업들을 유인하는 데 큰 효과를 가져왔다.

이 외의 주요국가들과의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1995년 기준) 2.3%로 미국, 영국, 아일랜드와 싱가포르 및 대만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9〉 참조). 또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총 고정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1995년 기준)로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중남미국가들은 1980년대 말 외채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였으며, 최근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외국인투자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중남미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멕시코							
FDI	2,634	4,762	4,393	4,389	11,503	8,428	8,566
FDI 잔액	37,132	40,108	42,725	45,586	55,373	62,926	69,960
브라질							
FDI	989	1,103	2,061	1,292	3,072	4,860	11,112
FDI 잔액	104,557	100,650	98,252	96,031	95,488	98,839	107,544
아르헨티나							
FDI	1,836	2,439	4,044	2,557	3,067	4,179	4,285
FDI 잔액	11,058	12,965	16,435	18,404	20,778	24,629	28,314
칠레							
FDI	590	523	699	809	1,773	1,695	4,091
FDI 잔액	12,332	12,262	12,418	12,783	14,074	15,547	19,259
중남미지역 전체							
FDI	8,359	15,421	17,718	17,301	30,219	30,079	43,583
FDI 잔액	175,597	178,527	183,585	188,500	207,263	229,670	262,234

자료 : 유엔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CEPAL) 및 각국 중앙은행, 1997.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의 취지는 외국인투자 관련제도를 투자가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경쟁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20%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내자본 비중은 4.4%이며 이에 대한 세계평균은 5.2% 수준이다.

〈표 9〉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한국	영국	아일랜드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1996년 말 순투자액	12,491	344,703	13,953	644,717	169,108	58,563	42,078	66,764	17,138
GDP 대비 투자비중	2.3	28.5	20.2	7.7	18.2	25.2	52.1	67.4	7.3
총 고정자본 대비 투자비중	1.1	13.2	24.0	5.9	25.7	6.5	17.9	24.6	2.7

주 : GDP 및 총 고정자본 형성 대비 외국인투자 비중은 1995년 기준임.
 자료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World Investment Report, 1997. 10.

III.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정비

최근 정부는 안정적인 외자확보와 고용창출 그리고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을 도입하게 되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의 취지는 외국인투자 관련제도를 투자가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경쟁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 같은 법안의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이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며, 대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고 입주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국고지원을 제공하는 등 종전의 '규제와 관리' 위주에서 '촉진과 지원'의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개방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투자제한업종의 개방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현재까지 남아 있는 42개 투자제한업종 중 11개 업종을 전면개방하고 2개 업종은 부분개방하는 한편 7개 업종에 대해서는 개방범위를 확대하는 등 20개 업종을 추가 개방하였다. 이 같은 외국인투자업종에 대한 추가개방으로 외국인투자제한업종은 31개 업종(미개방 13개 업종, 부분개방 18개 업종)으로 축소되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자유화율은

98.4%에서 98.9%로 증가하게 되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외국인직접투자 절차의 간소화

가. 신고·등록제도의 간소화

현행 외국인투자 신고수리제도를 단순 신고제도로 전환하고, 신고시 첨부서류도 외국인투자신고서 하나로 간소화하였으며, 기존의 주식취득을 통한 외국인투자시 소요되는 신고처리기간도 단축하여 신주취득시와 같이 즉시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등록 기관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본점에서만 취급하던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등록을 외국환은행 본·지점과 KOTRA의 본점 및 지방사무소와 해외사무소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외자도입 보고제 및 신고대리인 의무화제도의 폐지

종전에는 외자가 도입 또는 통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외자도입보고제도의 폐지로 투자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신고서 거주자를 신고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규정 또한 폐지함으로써 투자자에 의한 직접신고를 가능하게 하였고, 서식도 국문과 영문 중 선택하게 하는 등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다. 기술도입 관련 신고제의 완화

기술도입 관련 신고의 의무는 제도상 규정하고 있는 분야와 조세면제 대상에 대한 기술도입에 한정하고, 이 외의 기술은 신고의무 없이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완화하였다. 단, 현행 제도하에서는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와 주요 방산물자 관련 기술 및 조세면제 대상 기술에 대해서는 신고가 의무화되고 있다.

라. 국가간 M&A의 허용

기존주식 취득시 외국인이 국내기업 이사회에 동의 없이 지분의 100%까지 취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가간 M&A를 허용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구주취득

현행 외국인투자 신고수리제도를 단순 신고제도로 전환하고, 신고시 첨부서류도 외국인투자신고서 하나로 간소화하였으며, 기존의 주식취득을 통한 외국인투자시 소요되는 신고처리기간도 단축하였다.

기존의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의 조세감면을
대폭 확대하였다.

을 통한 외국인투자가 더욱 용이하게 되었다.

2. 지원제도의 확대

가. 조세지원제도

기존의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의 조세감면을 대폭 확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세금면제 기간을 현행 소득발생 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그 후 3년간의 50% 감면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같은 조세감면 혜택을 첨단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허용하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소유하는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의 경우는 감면기간을 대폭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시 처음 5년 동안은 전액을 면제해 주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하며 이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체 감면기간을 1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동 기간 내의 감면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 대상사업의 영위를 위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의 면제를 신규투자 이외에 증자시에도 허용함에 따라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경우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되며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의 경우는 50%가 감면된다. 그러나 기존주식의 취득을 통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감면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대기간은 현행 20년 내에서 50년 내로 확대하고 기간 만료 시 50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임대 대상은 현행 국유재산에서 지방자치체 소유의 공유재산까지 확대하며, 임대 대상 사업 또한 현행 고도기술 수반사업에서 첨단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대규모 투자금액 사업과 대규모 고용창출 사업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다.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위한 비용의 국고지원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임대료와 외국인투자 지역의 조성비용에 대한 감면 및 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지역은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 고용창출 수준 및 기술이전 효과 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지역에 조성이 가능하며, 단지조성 관련 비용에 대한 보조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 기업에 공단부지 가격을 감면해 주는 경우 이를 재정에서 일부 지원하며, 정부는 외국인투자 기업의 고용창출 규모를 기준으로 보조금 및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재정지원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규모와 유치노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라. 외국인투자 지원센터 설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와 홍보, 조사,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등 외국인투자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지원센터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 설치한다. 이에 따라 KOTRA를 외국인투자 일괄처리(one-stop) 서비스기구로 그 기능을 개편함에 따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관련 정부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KOTRA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협조관계의 유지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예로사항에 대한 해결 또한 KOTRA 내에 외국인고충처리기구가 담당하게 된다.

외국인투자자들은

투자결정시 생산요소의 비용과 사회간접자본 및 정부의 개방정책에 따른 시장자유화의 수준, 정치적인 안정과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사회·문화적 요소 등을 고려한다.

IV. 문제점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결정시 고려하는 주요 요인으로 생산요소의 비용과 사회간접자본 및 정부의 개방정책에 따른 시장자유화의 수준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과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사회·문화적 요소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결정요인 중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산요소의 비용은 투자결정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생산요소의 비용에는 노동, 토지, 금융 및 물류비용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노동비용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인해 아시아 주요국 중 두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비용(〈표 10〉 참조)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인해 아시아 주요국 중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11〉 참조).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고지가는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투자자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도 공장용지의 가격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과 주위의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2〉 참조).

우리나라의 금융비용은 외환위기 이전(1997년 상반기 기준)에도 금리수준이 일본, 대만과 독일의 2배 이상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금리를 3% 상회하는 등 상

〈표 10〉 아시아 주요국의 제조업 임금비교¹⁾

(단위 : 달러)

국가 (도시명)	한국 (서울)	중국 (상해)	대만 (타이페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본 (요코하마)	싱가포르
임금(월)	1,100~1,580	82~186	960~1,400	210~360	96~160	2,960	620~1,090

주 : 1) 1996년 12월 일반노동자의 임금 기준.
 자료 : 일본무역진흥회(JETRO), 1997, 4.

〈표 11〉 1996년 노동생산성 비교 (시간당 근로자 1인의 생산성)

(단위 : 달러)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
근로자 1인당 생산액	10.28	31.64	22.65	39.42	13.55	5.67	1.21

자료 : IMD(국제경영개발원),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1997』, 1997.

〈표 12〉 산업단지 분양가 비교

(단위 : 천원/평)

한국(1997. 3)		미국 (10개공단 평균)	영국 (7개공단 평균)	일본 (10개공단 평균)	중국 (63개공단 평균)	말레이시아 (8개공단 평균)
외국인전용 공단(광주)	명지독산 공단(부산)					
375	656	95	203	1,109	78	149

자료 : KOTRA, 『투자적격지 선정을 위한 주요국 산업공단 디렉토리』, 1996. 10.

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표 13〉 참조). 이 같은 금리는 외환위기 이후 더욱 악화되어 높은 금융비용으로 인해 기업의 수익구조가 더욱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4〉 참조).

우리나라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과소투자의 결과 국내총생산에서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6.3%(1996년 기준)로 과다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물류비가 기업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3%로 미국의 7.7%와 일본의 8.8%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표 15〉 참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방도는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상대평가에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리는 외환위기 이후 더욱 악화되어 높은 금융비용으로 인해 기업의 수익구조가 더욱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주요국의 명목금리 비교(1997. 5)

(단위 : 연 %)

한국 (은행보증 회사채, 3년)	미국 (국채, 3년)	영국 (정부채, 장기)	일본 (금융채, 5년)	독일 (국채, 3년)	대만 (회사채, 3년)
11.9	8.25	7.10	4.50	6.10	5.56

자료 : 「Federal Reserve Bulletin」, 미국, 1997.

〈표 14〉 주요국의 제조업 수익률 비교

(단위 : %)

	한국		일본 (1996)	대만 (1995)	미국 (1996)
	(1996)	(1997)			
매출액 영업 이익률	6.5	8.3	3.6	7.3	7.4
금융비용 부담률	5.8	6.4	1.0	2.2	-
매출액 경상 이익률	1.0	-0.3	3.4	5.1	8.3

자료 : 한국은행, 「1997년 기업경영분석」, 1998. 5.

〈표 15〉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의 국가간 비교(1994)

(단위 : %)

한국	일본	미국	유럽국가
14.3	8.8	7.7	5.8

자료 : 교통개발원, 「국가물류비 선정 및 추이분석」, 1996.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증자유치와
국내 투자환경의 홍보를
위해 사후관리 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제한업종에 대한 개방의 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제한업종의 개방고시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인투자 개방조치의 실효성을 상실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외국인의 신뢰도까지 실추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관련하여 최근 타결된 현대자동차의 노사합의는 「정리해고 및 근로자파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외에 알리는 부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투자자에 대한 투자상담 및 정보제공 관련 서비스체제 또한 최근까지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자상담창구가 KOTRA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이외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기구로 다원화되어 있고, 통합종합전산망이 구축되지 않아 기관간의 새로운 정보가 신속히 보완·전달되고 있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정보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기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신규투자 유치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문이다. 이들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증자유치와 국내 투자환경의 홍보를 위해서는 사후관리 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부처간에 폐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역 내의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과 애로사항의 해결을 포함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V. 향후 개선방향

우리나라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은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는 노동시장의 구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1998년 2월에 도입된 「정리해고 및 근로자파견제도」의 실행을 통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부는 일관적인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토지관련 고비용 구조는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의 도입을 통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의 각종 공장부지 관련 지원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미분양된 공장부지는 신속히 임대용지로 전환하여 투자유치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금융비용 관련 지원제도는 부적정하게 국내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금융지원을 외국인투자 기업에도 확대·적용하여 금융지원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 봄으로써 높은 금융비용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는 산업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이 법령의 근거 없이 50% 이상의 외국인소유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 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외국인투자 기업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빠른 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높은 금융비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한 금리인하와 담보 없이 신용을 바탕으로 한 대출 관행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물류비는 지속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의 확충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단기적으로는 외국인기업이 선호하는 수도권지역의 투자제한을 재검토하여 이들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다 활발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개방정책과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의 개방화정책의 추진을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고 이를 공표한 이후에는 이에 따른 각종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여 개방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관련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정부의 관련정책은 이미 도입된 근로기준법 및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상반되지 않는 방향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투자상담 및 정보제공 관련 서비스는 KOTRA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정보가 신속히 보완·전달될 수 있는 종합전산망의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외국인투자 관련 일괄처리센터의 설립으로 그 동안 부처간 입장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 정보 및 투자절차의 혼란을 배제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외국인투자 전반에 대한 권한을 지원센터에 부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한 애로사항의 처리문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안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일괄처리센터에서 전담함으로써 투자 초기부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사후관리체계의 정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개방정책과
정책의 일관성이 보다
활발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金正勳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조건부 보조금 비중의 증가는 자율적 재원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 이후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한층 강해진 지방정부는 이전재원의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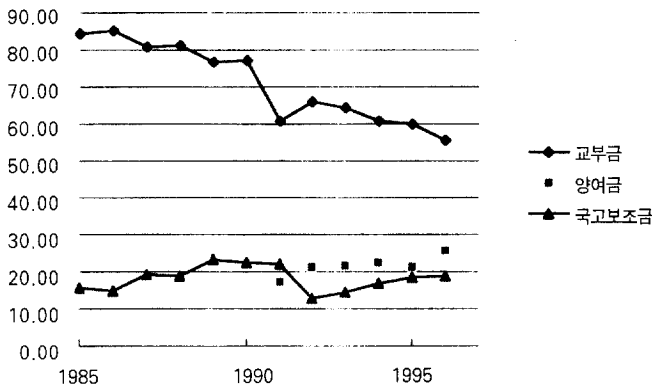
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90년대 들어서 재정조정제도가 보이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조건부 보조금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1〉 참고). 이는 국고보조금 자체가 최근 들어 늘었을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방양여금이 1991년에 도입되었고, 1994년에는 세수의 신장성이 큰 교통세가 지방교부세의 재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부 보조금 비중의 증가는 자율적 재원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 이후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한층 강해진 지방정부는 소위 '끈이 붙지 않은' 이전재원의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도 다양성 및 특수성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고, 또한 지방정부를 일일이 통제할 만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히 느끼고 있는 사안이지만, 구체적 개편안을 마련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부딪히게 된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 중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예산의 연속성이다. 특정 항목에 대한 지출이 지금까지 집행되어 왔으면 비록 원칙에 위배되더라도 이를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 1〉 이전재원의 종류별 점유비율



자료: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국고보조금의 개편을 위해서는 현재 지출되고 있는 500여 항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이다.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의 개편을 위해서는 500개에 달하는 단위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통·폐합의 조치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통·폐합을 단행할 경우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개편의 원칙 및 범위

1. 개편의 원칙

제도의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방안에 앞서 정책방향에 대한 일종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합의는 대개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개편안의 토의과정에서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고보조금 개편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될 것이다.

첫째는 국가자원의 효율적 운영이다. 어떠한 지출이든지 지출효과는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러한 지출이 꼭 필요한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의 정책목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록 전환기의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중앙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사실상 중앙정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건부 보조금과 일반 보조금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200여개의 자율적 지방정부가 탄생한 지금, 각 지방정부의 능력 및 역할을 신장시킬 경우 그만큼 공공부분이 보유하는 정보는 다양화·전문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의 정책목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재정립이다.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시만 따랐기 때문에 예산 및 지출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갖는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록 전환기의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중앙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가 국가자원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중앙정부의 임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지방정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조율하는 데 드는 중앙정부의 수고는 과거보다 더할 것이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세련된 통제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개편의 범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이전재원들은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국고보조금의 개편이 주된 목표라고 하더라도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모순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의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고보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전재원은 지방양여금인데, 이 제도는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의 일부를 포괄화·공식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표 1〉 참조). 그러나 보조금의 포괄화·공식화를 위해서는 세부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보완의 미비로 인하여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은 운영상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표 2〉 참조). 단지, 양여금의 재원이 법으로 정해진 반면 국고보조금은 매해 예산심의를 거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국고보조금의 포괄화·공식화는 지방교부세의 개편방향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만약 많은 항목에 걸쳐 보조금의 포괄화·공식화가 이루어진다면 공식에 의

〈표 1〉 지방양여금의 개요

(단위 : 억원)

대상 및 단위사업	배분비율	양여기준	금액 ¹⁾	양여금의 대상사업
1. 도로정비사업	- 주세 400/1000, - 양여금특정사업재원 630/1000, - 농특세전입액 6/10	- 미개설·미확장 및 미포장비율 또는 포장비율에 따라 - 중·장기계획 심사	15,827	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지방도,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시도·군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의 개설·확장·포장 및 유지·관리사업
- 광역시도 정비	18/100	광역시도의 미개설도로 및 미확장도로의 연적을 합산한 비율에 따라	2,669	
- 지방도 정비	20/100	- 개설·포장사업: 미개설도로 및 미포장도로의 연적을 합산한 비율에 따라 - 교통정책: 중·장기계획 심사 - 유지·관리사업: 포장도로의 연장비율과 사업계획 심사	2,965	
- 시의 국도정비	15/100	중·장기계획 및 국도정비사업계획 심사	2,224	
- 시의 시도정비	14/100	4/14는 시도정비를 위하여 중·장기계획 심사, 10/14는 시의 읍·면지역의 시도정비를 위하여 중·장기계획 심사	2,076	
- 군도 정비	18/100	- 개설·포장: 미개설도로 및 미포장도로의 연적을 합산한 비율에 따라 - 교통정책: 중·장기계획 및 군도정비사업계획 심사 - 유지·관리: 포장도로의 연장비율과 유지·관리사업계획 심사	2,669	
- 농어촌도로(유지, 관리사업은 제외)	- 15/100, - 농특세전입액 중 도로정비사업에 배분된 금액	미포장도로의 연장비율에 따라	3,224	
2.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양여금특정사업재원 115/1000	시 또는 군 관할구역 안의 면수의 비율에 따라	2,489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주생활권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 정주생활권개발	66/100	정주생활권·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 대상 면수의 비율에 따라	1,643	
-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34/100	오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면수의 비율에 따라	846	
3. 수질오염방지사업	- 주세 100/1000, - 양여금특정사업재원245/1000 - 농특세전입액 4/10	중·장기계획 심사 및 사업계획 심사	6,867	수질환경보전법·하수도법 등 수질오염방지관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사업
- 하수종말처리장시설	55/100	상동	3,392	
- 하수도관정비	10/100	상동		
- 하수관거정비	33/100	상동	2,035	
- 분뇨처리시설설치	10/100	상동		
-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8/100	상동	493	
- 오염하천정화	7/100	상동	247	
- 농어촌하수도정비	농특세전입액 중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배분된 금액	상동	700	
4. 청소년육성사업	양여금특정사업재원 10/1000	중·장기계획 및 사업계획 심사	216	청소년기본법 등 청소년육성관계법에 의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
5. 지역개발사업	주세 300/1000	재정부족액비율 및 재정보전수요에 따라	6,492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업
합 계			31,891	

* 1997년 지방양여금 세입예산: 주세 100%(20,544) + 전화세 100%(7,498) + 토지초과이득세50%(-) + 농특세 19/150(1,700) = 31,891

주: 1) 1997년도 예산임. 자료: 재정경제원, 1997년 예산개요: 각 해당법령, 1998.

사무의 종류를 엄격히 구별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가사무의 비용은 지방비 부담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2〉 지방양여금의 지방비 부담 실태

대상 사업	단 위 사업	지방비부담률	비 고
1. 도로정비사업	광역시도 정비사업	자체확보	-
	지방도 정비사업	50%	도비
	시의 국도 정비사업	자체확보	-
	시의 시도 정비사업	자체확보	-
	군도 정비사업	30%	군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0%	군비
2.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30%	도비 15%, 군비 15%
	농어촌생활환경개선	30%	도비 15%, 군비 15%
	오지개발사업	30%	도비 15%, 군비 15%
3. 수질오염 방지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50%	도청소재지 50% (도비 25%, 시비 25%)
		47%	기타지역 47% (도비 23.5%, 시군비 23.5%)
	분뇨처리시설	30%	시군비
	오염하천정화사업	50%	도청소재지 50% (도비 25%, 시비 25%)
		45%	기타지역 45% (도비 22.5%, 시군비 22.5%)
	하수도관정비사업	30% 이상	시군비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자체확보	-
4. 청소년육성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자체확보	-
5.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자체확보	-

하여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을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역할을 그만큼 축소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보조금의 도입이 크게 성공할 수 없다면 차라리 세입 공유적 성격을 띠는 지방교부세를 강화하든지, 보조금 배분방식을 보다 세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I.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이상과 같은 국고보조금의 개편방향 및 개편범위를 전제로 구체적 개편방안을 항목별로 분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고보조금의 축소

1980년대 말까지 8 대 2였던 일반 보조금과 조건부 보조금의 비율이 최근에는 5 대 5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혜택 범위가 지방에 국한되어 있으며 후생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 국가가 필수적으로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지방정부의 의사에 반하여 집행되는 국고보조사업 등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국비지원사무와 국가사무의 엄격한 구분

국비지원사무, 국가사무, 지방고유사업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국가사무를 지방정부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지방비 부담이 요구되고 있는데, 사무의 종류를 엄격히 구별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가사무의 비용은 지방비 부담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반면 기본적으로 지방사무이지만 중앙정부의 장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준보조율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과 관련하여 최근 일본에서 투자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합리화 작업은 하나의 참고가 된다. 일본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국고보조금사업의 특성을 전액국비, 일부국비, 그리고 지방전액부담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개편의 골격을 마련하였다. 또한 일본은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기관위임사무는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사업체제는 일본과 매우 비슷하므로 일본의 개편방안을 참고로 하여 사무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사후평가제도의 도입

국가사무이지만 지방정부의 대행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없애는 대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사업 수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단지 지출의 적법성

현재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단지 지출의 적법성만을 감사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국비지출이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은 국고보조금사업의 특성을 전액국비, 일부국비, 그리고 지방전액부담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개편의 골격을 마련하였다.

〈표 3〉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 의한 국고보조부담금의 정리·합리화 권고안

		기관위임사무		단체사무	
		경상경비	투자적경비	경상경비	투자적경비
전액국비	국고위탁금조치	國勢조사 國政선거 외국인등록 국민연금	(해당 없음)	未引場邦人の 조사 (해당 없음)	
일부국비	국고보조부담 + 지방부담(지방부담은 지방교부세에 의한 재원조치)	생활보험비 재해구조 원폭피해자 의료비	국도신설·개량 1,2급하천공사 砂防 지정지 공사 地滑 방지공사 해안공사	의무교육직원봉급 보육소 등 정신박약자 복지 노인보건사업	의무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지방도 어항·항만 건설 제3종공항 건설
지방전액부담	지방전액부담(지방교부세에 의한 재원조치)	국도유지관리 1,2급하천관리 종교법인관계사무 노동관계조정 신용조합감독	기관위임사무를 요하는 시설의 건설 등 2급하천공사(단독)	경찰사무 의회 운영 지방도 관리	고등학교 건설 사회교육·체육 스포츠시설 건설 지방도 청사 건설
	지방전액부담(수수료 등 특정재원은 지방교부세에 의한 재원조치)	호적사무 건설업허가	계량검정소 설비 호적사무 전산화 택지건물取引業法 사무의 설비	고등학교 등 관리 주민기본台帳 인감증명 일반폐기물처리 제3종공항의 관리 운전면허증	운전면허 센터 쓰레기처리시설 상수도공사(단독) 하수도공사(단독)
	지방전액부담(수수료 등 특정재원에 의한 재원조치)	여권발급 犬의 등록 조세특별조치의 증명	패스포트(여권)발급 시설의 정비 犬 억류소의 정비	전기사업·가스사업 등 공영기업 수익자부담 사업 등	국민숙사 등 전기사업 등 공영사업 시설
	지방전액부담(유보재원 등으로 대응)			법령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 지방정부가 자주적인 판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만을 감사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국비지출이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중앙정부는 시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만을 확인한다. 그러나 국비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수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농업부문의 보조금 역시 농업환경의 개선이라는 정책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처럼 지출의 적법성만을 감사할 경우 국고보조금이 형식적으로 지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 객관적 지표의 개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심사 및 평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관련 지출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인하여 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오염지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농업·보건·교육의 경우에도 정책목표와 일관된 지표를 개발할 경우 국고보조금의 낭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쓰레기 수거의 빈도, 보건소에서의 대기시간, 민원인들이 전화 받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도 지수화하여 보조금 산정에 이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지출의 효과도 파악하는 것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5. 개인보조의 확대

우리나라의 보조금 사업은 지방정부보다는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보조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997년의 국고보조금 5조 5천억원 중 33%인 1조 8천억원이 농업부문에 지출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농업진흥공사 등을 통한 국비 지출과 융자를 통한 농민에 대한 직접보조 중 어느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계획기술, 모자보건관리 등과 같은 보건관련 사업의 기준보조율이 50~80%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국가의 전액지불이 어려우면 지방정부가 아닌 개인이 일부를 직접 지불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4>에는 1997년 기준 부처별 국

우리나라의
보조금 사업은
지방정부보다는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보조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업성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표 4〉 국고보조사업 및 예산(1997)

(단위 : 백만원)

소 관	단위사업 수	예산액
농림부	73	1,850,835
보건복지부	127	1,440,275
건설교통부	16	683,701
환경부	26	290,600
해양수산부	41	250,236
교육부	38	190,374
문화체육부	61	246,428
통상산업부	11	149,206
내무부	21	127,459
노동부	5	19,113
외무부	1	4,601
국가보훈처	1	3,000
과학기술처	1	-
산림청	36	177,541
농촌진흥청	12	38,346
병무청	1	96,337
합계	471	5,568,052

고보조사업의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데, 많은 국고보조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농림부의 사업들이 이러한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이 있다.

6. 사업성과의 공개 및 주민만족도 측정

지방정부의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업성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물론 사업성과의 공개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가 발달한 유럽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를 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성과를 공개하고 주민만족도 측정을 제도화할 경우 국고지원금이 형식적으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통제를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보조대상사업을 포괄적으로 정하여 포괄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포괄보조금의 확대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통제를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보조대상사업을 포괄적으로 정하여 포괄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고보조금의 포괄·공식화를 위하여 도입된 지방양여금의 경우 포괄보조금의 시도가 성공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인구, 청소년·노인의 수, 면적, 하천의 길이 등을 예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포괄보조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 국고보조금의 양여금화 후 차이점(하수종말처리장시설)

	국고보조금	양여금
지방비부담비율 (군단위 지자체)	70 : 30 (국고보조금 : 지방비)	53 : 47 (양여금 : 지방비)
심사기준 및 자원배분기준	객관화된 배분공식 없음	객관화된 배분공식 없음
사후평가제도 (feedback system)	없음	없음
재원의 자율성	특정사업 한정	특정단위사업 한정
지자체간 연계	없음	없음

주 : 경기도 양평군·안성군·여주군, 제주도 북제주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8. 통합 메뉴화

국고보조대상사업의 통합 메뉴화는 사무의 간편화 및 심사의 투명성을 위한 것이다. 즉, 양식의 표준화를 통하여 제출서류를 축소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기본 취지이다. 그러나 <표 6>에 나타나 있는 일본의 국고보조부담금 정리 권고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의 경우에도 통합 메뉴화가 국고보조부담

사업성과에 따라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거나, 현재처럼 재정자립도를 토대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고보조금 본연의 역할과 상치된다.

금 개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사업의 성격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단위사업을 하나의 대상사업으로 묶는다고 해서 사무의 간편화와 심사의 투명성이 제고되지는

〈표 6〉 국고보조부담금 정리 권고안

(단위 : 항목)

항목	제2차 권고	제1차 권고
폐지사무	7	-
권한이양	6	11
국가 관여의 폐지·감축		
계	35	22
폐지	11	7
감축	24	15
必置規制의 수정		
계	79	-
직원	53	-
행정관련	10	-
심의회 등	16	-
보조금의 정리합리화		
계	100	-
폐지	9	-
일반재원화	14	-
교부금화	7	-
중점화	13	-
수정 및 재평가	6	-
구분변경	2	-
통합·메뉴화	3	-
적정화·완화	12	-
수속의 간소화	31	-
유효활용	1	-
국가사업	2	-

않을 것이므로 통합 메뉴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 차등보조율의 활용

현재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은 20~50% 정도의 지방비 부담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재정부담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객관적 기준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려면 국가적 관점에서 특정 사업의 중요성, 사업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성과에 따라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거나, 현재처럼 재정자립도를 토대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고보조금 본연의 역할과 상치된다. ~~KIP~~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려면 국가적
관점에서 특정 사업의
중요성, 사업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조세의 이해

- 재산과세(III): 상속세 및 증여세 -

일반적으로 조세는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납세자들이 우리 조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때,
조세정책에 대한 논의가 더욱 진지해질 수 있는 것이다.
본란은 일반 납세자가 우리나라 조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목 및 주제별로 비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개념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편집자 주>

韓 相 國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1. 상속세

산 축진을 도모하는 후자가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더 중시되고 있다.

1. 상속세의 정책적 의의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에 의하여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이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유증,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상속인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목적을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동 세목은 국가의 조세체계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것이며 둘째,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분산해서 편재된 부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이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부의 분

2. 상속세의 과세

가. 납세의무자

상속세는 재산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사람인 상속인, 유증을 받는 사람, 사인증여를 받는 사람이 납부한다.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 각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을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나누는 금액이다. 한편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세액에 대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연대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나.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이는 상속·유증(사인증여 포함)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말한다. 과세대상 재산은 본래의 상속 재산과 간주상속재산으로 구분된다.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으로서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말한다. 간주(의제)상속재산이란 상속세법에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말한다. 이는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나 조세부담의 형평을 위하여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다.

다. 상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중에서 공익성 내지 사회정책적 목적 등을 위해서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재산과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이 있다. 전자는 전사 기타 전상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재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유언으로 기부한 재산, 분묘에 속하는 3천평 이내의 금양임야 등이고 후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공익출연재산,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출연재산 등이다.

라. 과세를 위한 재산의 평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또는 간주상속재산에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목적을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국가의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것이며
둘째,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분산해서
편재된 부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상속세를 과세하려면, 이들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평가기준은 시가(時價)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그 시가를 산정하

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르게 된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그러나 실제로 시가를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평가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그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에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금·예금은 액면금액이 바로 시가이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건축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또는 기준시가 혹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마.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금액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으로서 상속인에게 그 의무가 승계된 세금, 공공요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차감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장례비용 역시 차감되는데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무조건 공제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고 증빙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차감한다.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로서 입증된 금액은 그가 남긴 유산에서 공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다.

바. 각종 상속공제

상속인들의 인간다운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각종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인이 항목별 공제액의 합계액과 일괄공제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 제도의 특징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고 항목별 공제액의 합계를 선택해야 한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1>을 참조하기

바란다.

사. 상속세 계산구조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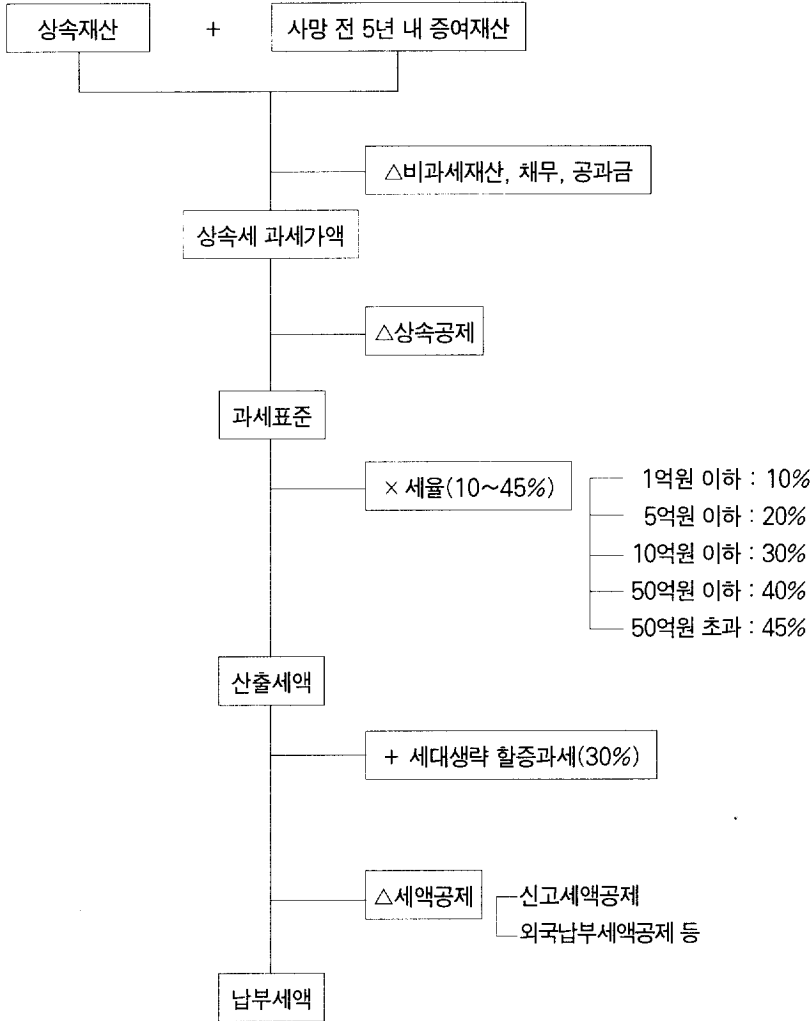
앞에서 정리한 관련 사항을 바탕으로 상속세 계산구조의 흐름을 정리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먼저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을 출발점으로 하여 비과세재산·채무·공과금 등을 차감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각종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과세표준금액에 상속세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있으면 더하고, 신고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을 공제하면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이다.

<표 1> 상속공제

	항 목	공제내용	한 도
① 기초공제	- 일반인 - 가업상속인 - 영농상속인	2억원 3억원 4억원	
②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 자녀공제 - 미성년자공제 - 연로자공제 - 장애자공제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상속받은 가액 1인당 3천만원 500만원×20세까지의 잔여연수 1인당 3천만원 500만원×75세까지의 잔여연수	최소 5억, 30억원 한도
③ 일괄공제	- 일반인 - 가업상속인 - 영농상속인	5억 6억 7억	
④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가액이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1억원 - 1억원 초과	전액 2천만원 금융재산가액×20%	2억원

※선택 ① 기초공제 + ② 인적공제(배우자공제는 제외) 중 큰 금액
 ③ 일괄공제

〈그림 1〉 상속세 계산구조의 흐름도



아.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

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는 상속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한편 법이 정한 특정 조건을 갖추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상속세를 3년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고(연부연납제도) 또 특정 조건을 갖추면 세무

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상속세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물납제도).

II. 증여세

1. 증여세의 정책적 의의

증여세란 증여계약에 의해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고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자연인의 사망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생전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으로써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과세사실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게 된다. 특히 상속세를 실효성 있게 과세하는 역할을 증여세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세라고 한다.

2. 증여세의 과세

가. 납세의무자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다. 증여계약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고, 무상으로 증여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한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자연인의 사망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생전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으로써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과세사실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게 된다.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단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진다.

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재산에는 증여계약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본래의 증여재산), 증여로 의제하는 재산과 증여로 추정하는 재산이 있다. 의제증여재산과 추정증여재산을 현행 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부를 세습하려는 변칙상속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증여로 의제하는 재산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받는 보험금, 낮은 가격 양도·높은 가격 매입의 차액,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 채무면제 등이 있다. 증여로 추정하는 재산에는 명의신탁, 배우자·직계존비속간의 양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 등이 있다.

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 중에서 공익성 내지 정책적 배려에서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외되는 재산에는 증여세법상 비과세되는 재산 및 증여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이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등은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은 조감법상 증여세가 면제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은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 과세를 위한 재산의 평가

현행 세법에 의하면, 재산평가기준은 시가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다. 즉 상속세와 동일하다.

마. 각종 증여공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표 2>를 참조하기 바란다.

바. 증여세 계산구조의 흐름

앞에서 정리한 관련 사항을 바탕으로 증여세 계산구조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본래의 증여재산에 의제 증여재산과 추정증여재산을 합하고 불산입 재산과 채무부담액을 차감해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한다. 증여세 과세가액에 누적합산 증여재산가액을 더하고 증여인적공제를 차감해서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한다.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다. 여기에 세대생략 증여할증세액이 있으면 더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신고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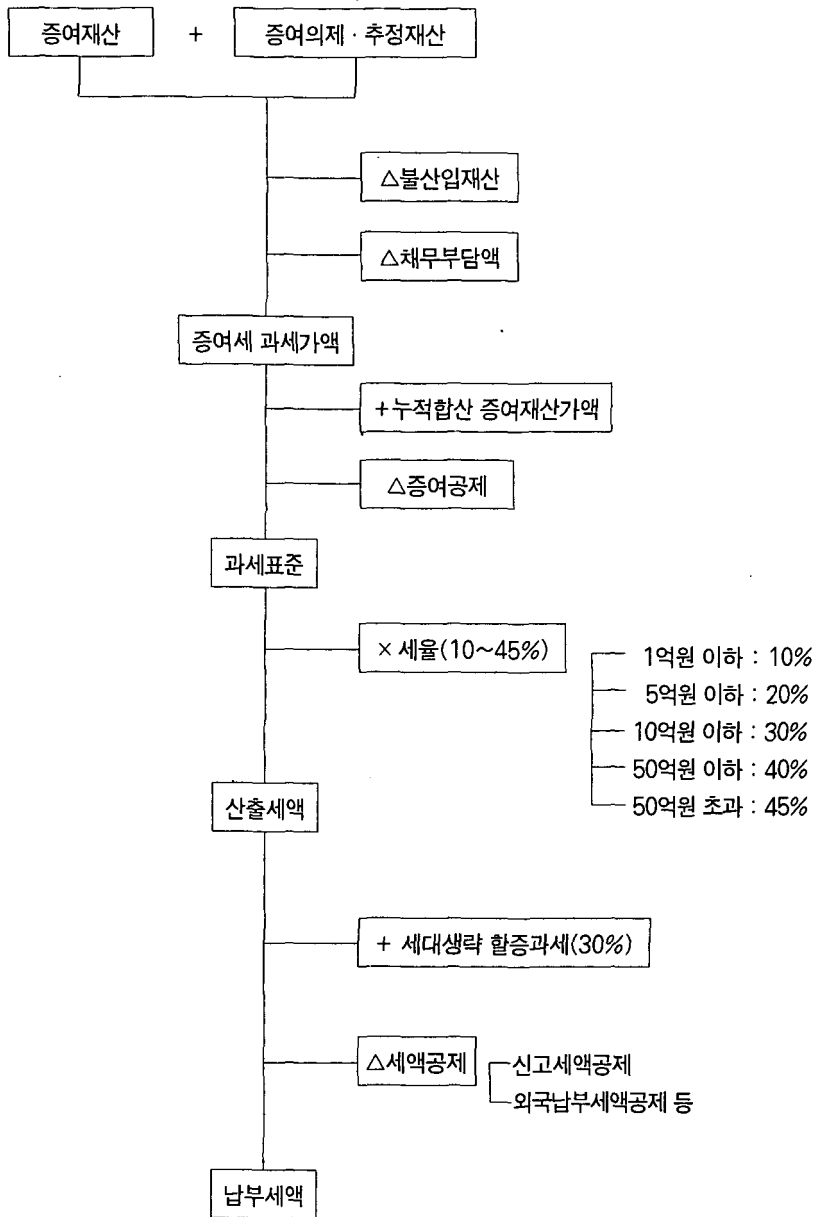
사.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는 증여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한편 법이 정한 특정 조건을 갖추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증여세를 3년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고(연부연납제도) 또 특정 조건을 갖추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증여세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물납제도). ~~111~~

<표 2> 증여재산 공제

항 목	공제내용	비 고
배우자공제	5억원	5년간 공제금액임
직계존비속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	

〈그림 2〉 증여세 계산구조의 흐름도





정책토론키포트

「경제위기하의 재정정책방향」

* 이 원고는 지난 9월 4, 5일 양일간 주택은행 연수원에서 재정경제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재정경제부 출입기자 초청 정책간담회

「경제위기하의 재정정책방향」의 주제발표 및 토론의 요약입니다.

- 편집자 주 -

경제위기하의 재정정책방향

주·제·발·표

朴宗奎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I. 문제의 제기

- 1997년 11월 21일 정부는 금융·외환시장의 심각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IMF에 유동성 조절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 경제는 소위 'IMF 시대'라고 불리는 미증유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
- 그 이후, 부실 금융기관의 폐쇄,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 실시, 국제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의 전면적 개방, 정리해고의 입법화 등의 제도적 변화가 있었으며 IMF와의 협의에 따라 통화를 초긴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 아니라면 불가능하였을 정도의 강도 높은 정책전환이 있었음.
- 그 결과로 빠른 시일 내에 환율이 안정되었

으며 외환보유고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리하게 전개됨에 따라 우리 경제는 예상 밖의 극심한 경기위축을 겪고 있어 심지어 산업기반의 붕괴에 대한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음.

-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경제가 선순환의 궤도를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현재 경제위기 국면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감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경제위기하의 재정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임.
- 이러한 모든 논의의 전제조건으로서 재정정책의 예산제약조건, 즉 중기적 재정여건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함.

II. 재정적자 확대의 불가피성과 중기 재정여건

- 1998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1조 5천억원으로서 경상가격 국내총생산의 약

5%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의 적자규모도 이에 못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금년도 재정적자 발생의 원인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발행되는 64조원 규모의 정부보증채 이자와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비용, 그리고 경기위축에 의한 세입감소라는 세 가지로 요약됨.

○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원인은 멕시코 등의 사례와 달리 거시경제적 기초여건이 불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고도성장 과정에서 만연하였던 도덕적 해이가 국제 신인도의 하락을 불러왔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음¹⁾.

- 외환위기를 초래하였던 우리 경제의 체질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이 설정되었으며 이제 금융구조조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민적 과제임.

○ 금융구조조정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그 대부분을 재정에서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님.

- 금융구조가 정상화되었을 때에는 금융기관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금융대출 관행의 구조변화가 따르게 되어 자금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제고됨²⁾.

- 금융구조가 정상화될 경우 고성장 시대에 만연되었던 과다차입에 의한 과잉투자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어 국내경제의 거품이 제거될 뿐 아니라 금융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냈다는 자체만으로도 국제 신인도를 높일 수 있음.

○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원, 즉 정부보증채의 이자지급은 당분간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겠으나 이는 신속한 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임.

- 스웨덴의 경우 초기에 재정이 짧은 시간 내에 대규모로 개입함으로써 금융구조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경제회생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시간을 끌다가 구조조정과 경제회복 모두를 아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대규모 재정지원으로 금융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정부보증채가 조기에 상환되어 재정부담은 오히려 예상 밖으로 빨리 줄어들 수 있음.

1) Stanley Fisher, "The Asian Crisis: A View from the IMF," *Midwinter Conference of the Banker's Association for Foreign Trade*, Jan. 1998 또는 Paul Krugman, "What Happened to Asia?," unpublished paper, Jan. 1998 등을 참조.

2) W. Alexander, J. Davis, L. Ebril and C. Lindgren, "Systemic Bank Restructuring Macroeconomic Policy,"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4.

○ 한편,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1998년 국세수입은 당초 예산 78조 7천억원보다 무려 10조 4천억원이 줄어든 68조 3천억원으로 예상되며 당분간 세수전망도 밝지 못하여 향후 재정적자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그리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상당수준의 실업률이 유지될 전망이므로 실업자를 위한 세출소요도 당분간 크게 줄어들기 어려울 것임.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가피한 이유로 말미암아 금년부터 대폭적으로 확대된 재정적자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 여기에 만약 산업기반 붕괴의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지속가능(sustainable)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III. 재정정책방향의 선택

○ 현 시점에서 재정정책이 선택해야 할 방향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첫째, 세출축소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가 정상궤도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안

- 둘째, 초기에 대규모 재정적자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기를 부양한 뒤 재정건전화를 추

구하는 방안

○ 첫번째 방안은 세출감소와 세입증가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과 실제생산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은 시기가 아닐 수 있음.

○ 두번째 방안은 적자규모를 더욱 확대시켜 중기적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재정이 경기부양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즉 현재의 위기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까지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탈피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재정정책기조의 전환이 요청됨.

- 재정적자를 중기적으로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당국의 경기부양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 경기부양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취지에서 재정이 개입하되, 경기회복 이후 적절한 시점부터는 강력한 긴축기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됨.

○ 또한 경기부양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단기간에 집중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엄격히 선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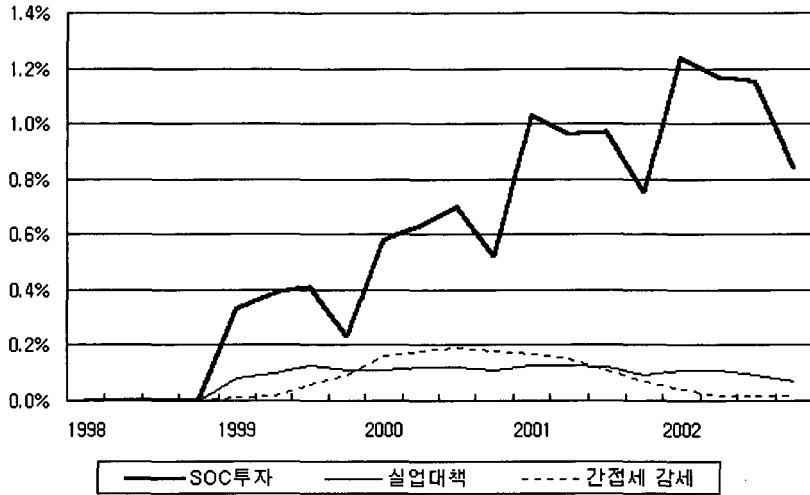
IV. 적극적 재정정책의 방향

- 자본지출의 확대, 실업대책비의 확대, 간접세의 감세 등 세 가지의 재정적자 확대방안이 가지는 경기부양 효과의 크기 및 시차를 비교해 보았음.
- <그림 1>과 <그림 2>에서처럼 세 가지 재정적자 확대방안이 실질 GDP와 실질 민간소비를 부양하는 효과를 비교해 보면 실질 GDP 증가를 위해서는 SOC투자 등을 포함하는 자본지출의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며 민간소비를 단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실업대책비를 포함하는 가계이전지출이 가장 효과적임.
- 간접세의 감세는 세출증액보다 경기부양효과가 작으며 시차효과도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단, 이 결과는 적자 증가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며 만약 국채를 모두 시장에서 소화한다면 자본지출 확대를 제외하고는 구축효과로 인하여 경기부양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감세보다는 세출, 특히 SOC 투자 등 자본지출을 늘리는 한편, 통화·재정의 정책협조(policy coordination) 차원³⁾에서 신축적 통화운용을 병행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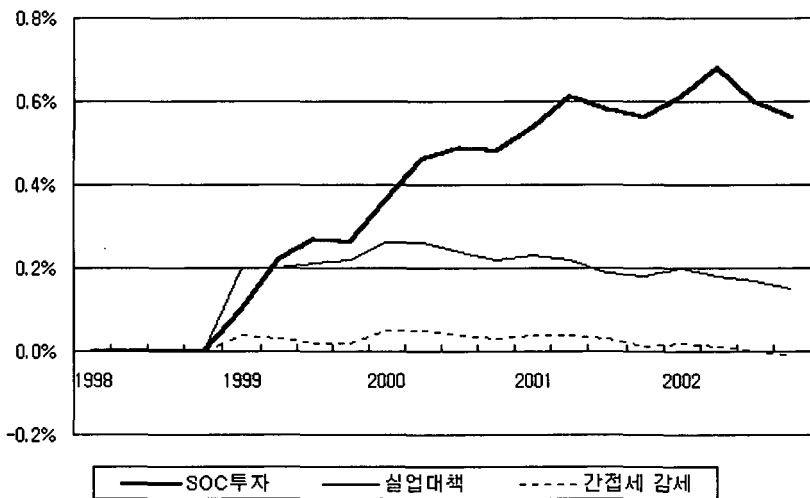
- 이 효과적임.
- 이를 위해 통화당국이 국채의 상당부분을 인수해 줌으로써 재정자금과 민간자금과의 결합을 피하는 한편 본원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렇게 조달된 재원으로 실업대책, SOC 투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에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신축적 통화운용을 통해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융경색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경기부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교육개혁, 농어촌 구조조정사업의 경우처럼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 보조금, 경상이전지출 등을 과감히 정비하여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함.
-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은 SOC 투자나 실업대책비의 확대보다 효과의 크기가 작으며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므로 중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세의 규모와 시한, 그리고 대상을 적절히 선택하여야 할 것임.
- 부동산시장이나 내구재 소비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특정 부문에 대한 한시적인 감세정책은 경기부양뿐 아니라 정부의 확실한 정책방향을 보여주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미시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

3) William D. Nordhouse, "Policy Games: Coordination and Independence in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4, pp.139~216 참조.

〈그림 1〉 재정적자 확대방안의 실질 GDP에 대한 효과



〈그림 2〉 재정적자 확대방안의 실질 민간소비에 대한 효과



- 또한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주어 경제 주체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는 수단으로서 유용할 수 있음.

V. 감세정책의 기본방향

○ 이론적으로 감세는 가처분소득의 증가, 시차적 상대가격의 변화, 유동성 제약의 완화, 심리적 기대효과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음.

- 감세는 직접적으로 소비주체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진작시킴.

- 또한 한시적인 세율의 인하는 미래소비에 대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을 하락시켜 현재소비를 늘려 주는 효과를 가짐.

- 간접세의 인하는 물가하락을 통해 실질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며 저소득층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음.

- 특정 부문에 집중되는 감세는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소비심리를 자극시킬 수 있음.

○ 이러한 감세의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감세 규모는 소폭으로 하여야 함.

- 구조조정을 위한 64조원의 정부보증채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최후의 보루'인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여야 함.

- 즉 감세는 경기부양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경기부양의 단초를 제공하는 역

할에 국한하여야 함.

○ 또한 감세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한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둘째,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부문에 국한되어야 하며 셋째, 중장기 세제개편방향과 어긋나지 않아야 함.

○ 대규모의 항구적인 감세는 적자 누적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는 재정위기 도래시 제2·제3의 금융위기에 국가경제 전반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또한 감세를 통한 소비촉진은 한시적인 감세를 단행할 경우 더욱 효과가 크게 나타남.

○ 감세의 대상은 단기간에 소비진작과 투자증대 효과가 큰 세목을 중심으로 하여야 함.

- 가령,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취득세·등록세,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일부 내구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의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은 감세만으로는 단기적으로 충분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출확대, 금융구조조정의 가속화, 신축적 통화운영을 병행하여야 한다는 것임.

VI. 결론

- 금융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늘어난 대규모 세출소요와 극심한 경기위축에 따른 대폭적인 세입감소는 재정수지를 크게 악화시켰으며 앞으로 당분간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밖의 극심한 경기위축으로 산업기반의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향후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지속가능하지 않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은 당분간 적극적으로 경제정상화에 기여하되 제한적 규모로 가장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경기부양에 대한 정책의지를 확고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감세를 실시하더라도 한시적이며 가능한 소규모로, 중장기 세계개편방향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대기수요의 실제수요로의 전환을 통하여 소비 및 투자를 효과적으로 진작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세출을 확대하더라도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 보조금, 경상이전지출 등을 과감히 정비하여 비효율적이고 낭

비적인 요소는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제거되도록 해야 함.

토·론·요·약

박 호 근 연합통신 기자(간사)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운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의 경제문제는 금융시스템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였다고 생각한다. 금융시스템의 개선 없이 단순히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경기부양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권 충 원 내외경제신문 기자

주제발표에서는 SOC에 대한 정부투자가 경기부양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지만 자금순환이 되지 않고 민간부문에서 소비지출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이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현재 민간부문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하여 가계소득이 12% 감소한 데 반해 소비지출은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볼 때 필요 이상의 저축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수진작을 위해 정부가 시중에 자금을 풀다고 해서 민간부문이 이를 따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자금순환이 나쁜 것은 예금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위해 은행들이 8% 수익

률밖에 얻을 수 없는 투신사나 한은 RP 등에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은행들의 안전 위주의 자금운용으로 기업들은 대출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어 결국에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고 만다. 은행의 수익성도 악화되어 부실화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주재발표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너무 피상적이다.

한국은행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자금순환 문제를 국공채를 발행하여 일시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민간부문에 떠맡기는 식이 되어 어려움만 가중시킬 것이다.

김 영 태 매일경제 기자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GDP를 향상시키려면 얼마나 큰 규모의 재정지출이 요구되는지, 또한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다.

최 성 호 MBN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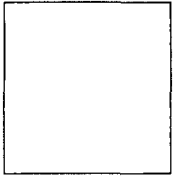
정부가 한시적인 대책으로 국민으로부터 신용을 얻고자 한다면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fooling effect로 국민들을 한시적으로 속이는 행위로 생각된다. 일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궁금하다.

박 종 규 박사

세계경제가 둔화되어 가고 금융경색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재정적자 확대만으로 경제의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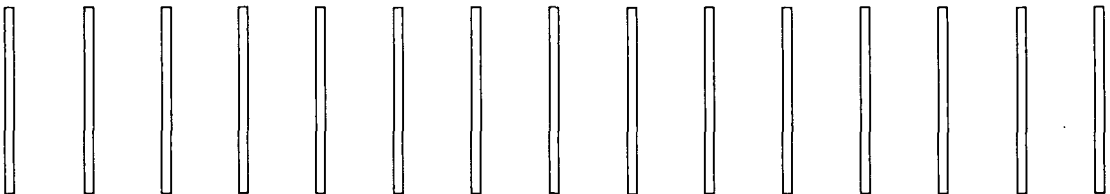
흐름을 바꾸어 놓기는 힘들 것이다. 특히 감세는 경제주체들이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느껴야 하며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할 것인지 저축을 할 것 인지를 결정해야 하므로 세출보다는 시차가 길고 효과도 크지 않다. 그러나 재정적자의 확대는 경기회복의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감세를 추진하려는 것은 정부의 경기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심리적인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최근 소비자 및 투자자들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으므로 심리적인 효과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소비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감세하여 바젠세일효과를 도모한다면 거시적 분석으로 포착되지 않는 미시적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시스템의 문제로 자금이 최종수요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통화공급을 아예 포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국채인수를 통해 정부부문 통화라도 늘려 재정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자본지출을 4조원 확대하면 약 0.5%p 정도 실질 GDP가 늘어날 수 있으나 이 재원을 국채의 시장소화로 조달하면 효과는 크게 상쇄된다. 재정지출의 확대로 얼마만큼의 GDP가 늘어날 수 있는지는 중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 적자확대로 인하여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재정도 건전화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KPF**



정책흐름

199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 개요 및 주요 분야별 예산요약 -



199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 개요 및 주요 분야별 예산요약 -

※ 이 자료는 9월 25일 기획예산위원회 · 예산청에서 발표한 「199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의 전문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 요약

I. 1999년 재정규모

○ 재정규모 : 1998년 2회 추경예산 대비 5조 271억원이 늘어난 85조 7,900억원(6.2% 증가)

(단위 : %)

	1996	1997	1998당초	1회추경	2회추경	1999 안
증가율	14.8	13.4	5.7	3.8	13.1	6.2(13.7')

주 : ' : 1998 당초예산 기준

- 일반회계 : 75조 5,800억원 → 80조 5,700억원(6.6%)
- 재특회계 : 5조 1,800억원 → 5조 2,200억원(0.8%)
- 계 : 80조 7,600억원 → 85조 7,900억원(6.2%)
- 주식매각수입 : 1조 3천억원 → 2조 1천억원
- 국채발행 : 11조 7천억원 → 13조 5천억원

○ 주요 지표

- 실질성장률 : -5% 내외 → 2% 내외
- 조세부담률 : 19.8% → 19.7%
- (1인당 조세부담액) (183만 1천원) → (187만 8천원)
- 통합재정수지 : -5% → -5%
- (대GDP)

II. 1999년 예산의 특징

1. 경제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한 예산

○ 금융시스템의 조기정상화를 위한 금융구조조정비용을 우선

적으로 지원

- 부실채권 정리, 증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한 정부보증채권 이자 : 3조 6천억원 → 7조 8천억원

2.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 예산

- SOC 투자확대로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를 활성화 : 11조 5천억원 → 12조 1천억원(5.0%)
- 1998 본예산 대비 20.5% 증가
- 내년 1/4분기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여 조기집행
- 중소기업 및 수출 · 외국인투자 유치를 중점 지원 : 3조 9천억원 → 4조원(1.8%)
- 1998 본예산 대비 25.5% 증가

○ R&D, 정보화 등 미래에 대비한 투자도 확대

3. 실업자 및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예산

- 실업대책 예산을 대폭 증액 : 5조 7천억원 → 8조 2천억원(45.3%)
- 생활보호자 57만명 추가지원(116만명 → 173만명) : 4,972억원
- 자활보호자 생계비 보조(월 15만원, 13만가구) : 2,340억원

4.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에 솔선한 예산

- 농어촌, 교육, 국방분야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며 전체 지원규모는 축소 : -1조 4,014억원
- 공무원 인건비를 1998년에 이어 재삭감(기본급의 10% 상당액)하고 정원 7,743명 감축 : -8,165억원
- 출연·보조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통폐합, 보조금 정비로 예산 절감: -3,900억원
- 행정경비는 1997, 1998년 각각 10% 삭감에 이어 내년에도 10% 재삭감 : -1,791억원

- 「시·도지사협의회」 개최 : 중앙·지방간 의견교환 통로
-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자문회의」를 운영
- 30대 중점관리사업에 대해 작업반을 구성하여 현장확인 등 사업평가 실시
- 예산편성방식 개선
- 기본사업비 신설 및 총액계상사업확대(18개 사업 → 39개 사업) 등 각 부처의 자율성 확대
- 계속비제도 확충(5개 사업 → 12개 사업)으로 장기대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경쟁을 촉진
- 용지보상비, 일반행정경비 중 일정액은 다음 연도 이월을 허용하여 예산집행의 신속성 부여

III. 새로운 예산편성방식과 절차를 도입

- 수요자 요구 적극 반영

I. 1999년 예산편성 여건 및 과제

- 내년도 우리 경제는 금년에 비해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예산편성 여건은 금년과 같은 어려움이 계속될 전망
- 조세수입은 금년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되어 금년보다 3조원 증가에 그치는 수준

(단위 : %, 조원)

	1997	1998	1999 예산안
성장률(실질)	5.5	-5 내외	2 내외
조세수입	69.9	68.5	71.6

- 세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금융구조조정, 실직자 지원, 국채 이자 등의 불가피한 세출소요는 크게 증가
- 금융구조조정 비용, 실업자 보호, 국채이자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만 9조원(9조 5천억원 → 18조 5천억원) 증가
- 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은 세출사업의 삭감과 국제발행이 불가피

- 제2 건국을 위한 「국정운영 6대과제」 등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적자를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조기에 균형재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구축 필요
- 이를 위해 재정운용방식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강력히 추진

II. 1999 예산(안) 개요

1. 재정규모

- 내년도 재정규모는 85조 8천억원으로 1998년보다 5조원, 6.2% 증가

- 일반회계는 1998년 75조 6천억원에서 6.6% 증가한 80조 6천억원
- 조세수입은 62조 4천억원으로 1998년보다 3조 1천억원 증가
- 국채발행규모는 1998년 11조 7천억원에서 13조 5천억원으로 증가
- 재정용자 특별회계(순세입)는 5조 2천억원으로 1998년보다 400억원 증가

(단위 : 억원, %)

	1998 예산		1999		
		증가율	예산(안)	증가액	증가율
- 일반회계	755,829	11.8	805,700	49,871	6.6
• 조세수입	592,569	- 7.5	623,733	31,164	5.3
• 세외수입	46,442	31.0	46,967	525	1.1
- 국채발행	116,818	순증	135,000	18,182	15.6
- 재정용자(순세입)	51,800	35.5	52,200	400	0.8
재정규모	807,629	13.1	857,900	50,271	6.2

- 일반회계와 재정용자특별회계(순세입) 및 기타 21개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규모는 1998년 121조 3천억원 수준에서 4.3% 증가한 126조 5천억원

(단위 : 억원, %)

	1998 예산		1999		
		증가율	예산(안)	증가액	증가율
• 일반회계+재특(순세입)	807,629	13.1	857,900	50,271	6.2
• 특별회계*	405,523	1.3	406,976	1,453	0.4
합 계	1,213,152	8.9	1,264,876	51,724	4.3

주 : 1) 재정용자특별회계를 제외한 21개 특별회계

2.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은 1998년보다 6.6% 증가한 80조 6천억원
- 국세는 1998년 예산 대비 5.3% 증가한 62조 4천억원
- 내국세는 1999년 경상성장(經常成長)과 세법개정 등에 따른 세수

증가효과 등으로 2.1% 증가

- 교통세는 1998년 9월 휘발유·경유 인상효과를 반영하여 22.3% 증가
- 관세는 1999년 수입전망 1,150억달러, 환율 1,300원/달러를 전제로 11.0% 증가
- 세외수입은 1998년보다 525억원 증가된 4조 7천억원
- 주식매각 수입은 2조 1천억원으로 1998년보다 8천억원 증가
- 일반회계 세입부족분 13조 5천억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

- 재정용자특별회계의 순세입규모는 5조 2천억원으로 1998년보다 400억원 증가

(단위 : 억원)

	1998예산	1999예산(안)	증감	증가율
○ 일반회계	755,829	805,700	49,871	6.6
- 국세	592,569	623,733	31,164	5.3
• 내국세	472,326	482,184	9,858	2.1
• 교통세	71,700	87,683	15,983	22.3
• 관세 등	48,543	53,866	5,323	11.0
- 세외수입	46,442	46,967	525	1.1
• 주식매각	12,500	20,900	8,400	67.2
• 기타	33,942	26,067	-7,875	-23.2
- 국채발행	116,818	135,000	18,182	15.6
○ 재특회계	51,800	52,200	400	0.8
합 계	807,629	857,900	50,271	6.2

3. 세출예산(안)

- 내년의 세출규모는 85조 8천억원으로서 금년 대비 5조원이 증가되었으나
- 지출 우선순위가 높은 금융구조조정, 실업대책비 등의 지원은 확대하고
- 구조조정을 통해 운영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농어촌, 교육, 국방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

〈 부문별 내역 〉

(단위 : 억원)

	1998예산	1999예산(안)	1998예산 대비 증감
○ 금융구조조정	36,000	77,866	2.2배, 4조 2천억원 증가
○ 실업자보호	56,634	82,295	45.3%, 2조 6천억원 증가
○ 사회복지	46,925	53,525	14.1%, 6,600억원 증가
○ 중소기업 및 수출	39,088	39,794	1.8%, 706억원 증가
(1998 당초예산)	(31,708)		(당초예산대비 25.5%, 8천억원 증가)
○ SOC투자	115,002	120,705	5.0%, 6천억원 증가
(1998 당초예산)	(100,157)		(당초예산대비 20.5%, 2조 1천억원 증가)
○ 문화예술	3,551	4,525	27.4%, 974억원 증가
○ 농어촌 지원	85,264	80,689	-5.4%, -4,575억원
(유통예산)	(4,471)	(7,141)	(59.7%, 2,670억원 증가)
○ 국방투자	138,000	137,490	-0.4%, -510억원
○ 교육개혁	174,861	165,932	-5.1%, -8,929억원
○ 과학기술·정보화	35,682	37,204	4.3%, 1,522억원 증가
○ 환경개선	17,807	18,123	1.8%, 316억원 증가

- 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 지원 확충(1조 3천억원→1조 4천억원), 수출보험기금 지원(4천억원→3천억원),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40억원→1천억원) 등

2.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

- 기업·금융 등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를 구제하고 사회안정방을 확충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실업자에게 최대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확대(1조원→2조원)
-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저소득 실업자 및 일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
- 생활보호대상자 57만명 추가지원(4,972억원), 자활보호대상자 13만가구 생계비 보조(2,340억원)·결식자녀 중식지원(342억원) 등

III. 1999 예산(안)의 주요 특징

1.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

- 금융시스템의 조기 정상화로 침체된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금융구조조정비용을 최우선 지원
- 부실채권정리 및 예금보험기금재원 이자 : 3조 6천억원 → 7조 8천억원
- SOC투자 확대로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
- 계속사업에 대한 완공위주로 SOC투자를 최대한 확대(11조 5천억원 → 12조 1천억원)
-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내년 1/4분기에 집중 배정하여 재정이 적극적인 경기대응기능을 수행
-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경제회복의 활력이 될 수출·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에 역점

3. 예산운영 효율화로 생산성을 제고

- 42조원 투자가 마무리된 농어촌 지원예산은 축소(-5.4%)하되, 생산중심에서 유통중심으로 지원방향 전환(유통부문에산 4,471억원→7,141억원, 59.7% 증)
- 유통단계를 축소(5단계 → 3단계)하고 직거래 비중을 제고(11%→15%)
- 지방교육재정을 비롯한 교육투자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교육의 질적향상 도모(-5.1%)
-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예산 2천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대학 운영비, 시설투자비 등은 축소
- 군 구조개혁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국방예산을 감액 편성(-0.4%)

- 전력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4조 802억원 → 4조 1,403억원, 601억원 증가) 및 병영시설 현대화 등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4,673억원 → 5,283억원, 610억원 증가)는 확대

4. 공공부문이 고통분담에 솔선하고 경영혁신을 추진

- 공무원 인건비(-5.7%) 및 행정경비(-10%)를 삭감
 - 체력단련비 폐지 등 인건비(-8,165억원) 및 행정경비(-1,791억원) 감축
- 정부출연·위탁·보조기관 등에 대한 경영혁신 추진
 - 정부출연·위탁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보조금사업은 보조기관의 성격,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보조를 중단하거나 일몰제 적용(-3,900억원)
- 공직사회 개혁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보수체계를 대폭 개편
 - 3급 국장급 이상(1,500명)에 대해 1999년 1월부터 연봉제를 도입
 - 직위비중, 책임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연봉범위를 설정
 - 4급 과장급 이하는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
 - 상급자의 평가 외에 동급자 및 하급자에 의한 평가를 추가

5. 예산편성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제고
 - 예산요구 및 편성단계에서 수요자 의견을 적극 수렴
 - 예산요구 단계부터 이해관련기관 등 수요자 의견을 수렴
 - 소비자단체, 경제단체, 학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자문회의를 통해 수요자 의견을 반영
 - 중앙·지방간 재정관련 의견교환의 통로로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

- 예산의 편성·집행·평가의 환류(feed back)기능 강화
 - 30대 중점관리사업에 대해 수요자, 외부전문가, 관계부처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현장확인 등 철저한 사업평가를 거쳐 소요예산 반영
 - * 예 : 고속철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통합합(23개 기관 → 10개 기관) 등
 -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신규 도입
 - 정부공사 낙찰시 공사비가 예정가격의 75%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정부투자기관 공사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제한경쟁시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 일정규모(예 :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를 신규 도입
 -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및 설계 → 보상 → 공사의 순으로 예산 반영
 - 사업집행현장 방문, 수요자 여론조사 실시, 정책토론회 개최 등의 기회를 확대하여 실제 집행결과가 예산편성에 직접 환류되도록 함.
 -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각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
 - 각 부처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기본사업비를 1조원 확대(6천억원 → 1조 6천억원)
 - 소요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각 부처에서 추후 결정해 자율 집행하는 총액계상사업을 대폭 확대
 - 18개 사업 4조 4천억원 → 39개 사업 6조 6천억원
 - * 추가 지정사업 : 어항건설, 국도 유지보수, 도서종합개발 등
 - 용지보상비, 일반행정경비 중 일정액에 대해 예산의 이월을 허용
 - 용지보상비, 어업권 보상비 등 손실보상비는 다음 연도중 집행 가능성이 클 경우 보상계약 체결 전이라도 이월을 허용
 - 일반행정경비 등 경성적 성격의 경비 중 일정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여 연말의 낭비적 지출을 방지
 - * 예산회계법 개정 추진(금년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예정)

IV. 분야별 지출내역

서 자체 상환

1. 금융구조조정 지원: 3조 6천억원 → 7조 7,866억원 (116.3%)

- 경제운영의 기본 시스템을 조속히 복원하기 위해 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지원
- 성업공사 및 예금보험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실채권 매입·증자지원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대지급을 실시하고,
- 재정에서는 채권이자 상환비용 지원
- 채권원금은 인수한 부실채권의 적정가격 매각, 증자지원분 회수 및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하여 성업공사 및 예금보험공사에

-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소요비용 마련을 위한 채권발행 규모가 64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재정에서 지원하는 채권의 이자상환 비용도 증가하나,
- 최근 금리의 하향 안정화 및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부채권의 발행으로 1999년 재정부담은 8조원 이내로 전망(3조 6천억원 → 7조 7,866억원)
- 재정지원과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추진
- 부실금융기관 주주·경영진의 손실분담 및 조직 감축 등 자구노력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재정지원을 실시

〈 금융구조조정 지원 〉

(단위 : 억원)

	1998예산	1999예산(안)	증감	주요내역
○ 부실채권 정리기금 채권 이자지원	18,000	37,241	19,241	-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채권발행규모: 32조 5천억원 • 1997년: 7조원 • 1998년: 20조 5천억원 • 1999년: 5조원 - 1999년도 이자지원 소요 : 37,241 • 1997년도 발행분: 5,998(이자율 12%) • 1998년도 발행분: 26,368(이자율 12~13%) • 1999년도 발행분: 4,875(이자율 13%)
○ 예금보험기금채권 이자지원	18,000	40,625	22,625	- 증자지원을 위한 채권 발행규모: 17조 5천억원 • 1998년: 17조 5천억원 - 대지급을 위한 채권 발행규모: 14조원 • 1998년: 9조원 • 1999년: 5조원 - 1999년도 이자지원 소요 : 40,625 • 1998년도 발행분: 35,750(이자율 13~15%) • 1999년도 발행분: 4,875(이자율 13%)
합 계	36,000	77,866	41,866	116.3% 증

2. 중소기업·수출 및 외국인투자유치 : 3조 9,088억원
 → 3조 9,794억원(1.8%) (1998 당초 대비 25.5% 증)

4천억원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지원 : 300억원

-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확대
-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지원을 계속 유지 : 1조 2천억원
- 지방중소기업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신규지원 : 245억원
- 주택신용보증기금에 2천억원 신규 지원
- 기존의 유사운전자금을 경영안정자금으로 통합하여 지원 :

-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수출을 위한 유망 벤처·중소기업 지원
- 벤처기업의 창업공간 확충 및 창투조합 출자 등 벤처산업 지원
- * 벤처기업창업공간 등 1,122억원, 벤처캐피탈 조성 900억원, 창업강좌 지원 등 31억원

〈 중소기업·수출 및 외국인투자유치 〉

(단위 : 억원)

	1998예산	1999예산(안)	증감	주요내역
○ 중소기업 지원	33,719	34,423	704	
- 금융지원	14,850	14,545	-305	
• 신용보증기관	13,000	12,000	-1,000	○ 차관자금 10억달러 추가출연
• 지역신용보증조합	-	245	245	○ 조합당 35억원 × 7개조합
• 주택신용보증기금	-	2,000	2,000	
• 어음보험	1,500	-	-1,500	
• 공제사업기금	350	300	-50	
- 기술개발 지원	7,331	7,646	315	
• 산업기술자금	6,608	6,666	58	○ 공업기반 및 청정생산기술개발
• 기술혁신개발	322	400	78	○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
• 산학연공동기술개발	101	130	29	○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
• 과학기술진흥기금	300	450	150	○ 용자
- 구조개선사업	11,025	11,227	202	
• 창업및진흥기금	8,695	9,327	632	○ 경영안정자금(4,000) 등
• 산업기반기금	2,330	1,900	-430	○ 시설 및 기자재구입비 용자
- 벤처산업 지원 *	2,758	2,768	10	
- 대구섬유산업 지원 *	80	835	755	○ 신제품개발센터 등
- 기타 중소기업지원	513	1,005	492	○ 소상공인지원센터(50), 공공근로사업(576) 등
○ 수출·외국인투자유치	5,369	5,371	2	
- 수출보험기금	4,000	3,000	-1,000	○ 31조 6천억원의 수출보험 인수
- 대한무역진흥공사	1,042	930	-112	
- 무역진흥사업	82	145	63	○ 무역전시장(50), Super Expo(8) 등
- 중소기업수출지원	40	89	49	○ 수출기업화(12), 인증마크(25)
- 농수산물 수출촉진	165	207	42	
- 외국인투자유치	40	1,000	960	○ 임대용지 전환을 위한 부지매입, 분양가·임대료 차액보조 등
합 계	39,088	39,794	706	1.8% 증(1998당초예산대비 25.5% 증가)

주 : * 표시는 합계에서 제외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구조개선 및 기술개발 지원 : 1조 8,356억원 → 1조 8,873억원
- 영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0여개 주요지역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 50억원(신규)

- 국제수지 구조개선을 위해 수출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무역금융애로 해소 등을 위해 수출보험기금에 3천억원을 추가지원하여 수출보험기금을 1조원으로 확충
- 해외인증마크 획득 지원, 무역·투자촉진단 파견, 농산물 수출촉진 등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계고 : 285억원 → 441억원
- 수도권에 대규모 무역전시장 건립을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one-stop service 체제 구축 지원 : 81억원(신규)
- 원활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자에게 임대용 토지 제공을 위한 토지매입 등 지원내용 대폭 확대 : 40억원 → 1천억원

3. 사회간접자본 및 지역균형개발투자 확대 : 11조 5,002억원 → 12조 705억원(5.0%) (1998 당초예산 대비 20.5% 증가)

- 물류비 절감, 고용유발, 경기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감안하여 SOC 확충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5% 투자 규모 증대
- 대형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집중 지원
-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 연차소요 반영 : 5,237억원 → 5,820억원
- 인천신공항의 2001년 초 개항을 위한 연차소요 반영 : 7,292억원 → 7,936억원
- 서해안 고속도로의 조기완공을 위해 중점지원 : 2,937억원 → 4,009억원
- 각 지역에 걸쳐 고르게 고용을 유발하고 물류개선효과가 높은

- 도로·항만·지하철 건설에 중점투자
- 고속도로(1조 7,979억원 → 1조 9,668억원), 국도(3조 8,954억원 → 4조 1,373억원)
- 신항만(2,376억원 → 3,617억원), 지하철(9,441억원 → 1조 304억원)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숙원도가 높은 사업은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반영
- 부산-울산, 광주시우회도로 등 설계가 끝난 5개 신규고속도로 착공소요(600억원) 및 무안-광양고속도로 사전조사비 신규반영(10억원)
- 예천공항 확장 공사비(50억원) 및 전주공항 설계비 신규반영(8억원)
- 경춘선 복선전철화(68억원 → 270억원), 부산가덕신항(1,335억원 → 2,367억원) 및 울산 신항 건설지원 (60억원 → 103억원)

- 수원-천안 북부선(1,300억원), 전라선(1,000억원), 호남선(900억원)등 시급성이 높은 사업은 계속비로 전환하여 조기완공 추진

- 부진한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99년중 국내외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5천억원 규모의 투융자회사를 설립하고 산업은행을 경유하여 1천억원 출자지원

-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투자가 미흡했던 강원도 태백권, 경북 북부, 경남 서부, 전남·북 산간지역, 서해안 지역에 투자 확대

가. 도로

- 고속도로는 서해안, 중앙,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국가기간교 통망의 중추노선을 중점 지원
- 서해안고속도로는 사업기간을 1년 단축(2002년 → 2001년 완공)

〈 사회간접자본 및 지역균형개발 투자확대 〉

(단위 : 억원)

	1998예산	1999예산(안)	증감	주요내역
○도로	56,932	61,041	4,109	
- 고속도로	17,979	19,668	1,689	• 고속도로 총규모: 35,553 → 39,072
- 국 도	38,954	41,373	2,420	• 일반국도: 16,191 → 14,500(-1,691)
○철 도	18,283	18,160	-123	
- 고속철도	5,237	5,820	583	• 경부고속철도
				- 사업비: 4,770 → 5,555(증 785)
				- 관리비 등: 467 → 265(-202)
- 일반철도	13,046	12,340	-706	• 수원-천안: 1,125 → 1,300(증 175)
				• 전라선개량: 1,140 → 1,000(-140)
				• 송정리-목포: 1,200 → 900(-300)
				• 충북선전철: 75 → 200(증 125)
○지하철	9,441	10,304	863	• 서울: 2,707 → 3,126(증 419)
				• 부산: 2,641 → 2,706(증 65)
				• 광주: 1,099 → 1,151(증 52)
○항 만	10,058	9,460	-598	
- 신항만	2,376	3,617	-1,241	• 부산신항: 1,335 → 2,467(증 1,132)
				• 목포신외항: 385 → 251(-134)
- 일반항만	7,682	5,843	-1,839	• 부산항: 674 → 306(-368)
				• 목포항: 152 → 187(증 37)
				• 군산항: 737 → 638(-99)
○공 항	9,913	10,223	310	
- 인천국제공항	7,292	7,936	644	• 공항시설: 5,410 → 5,477(증 67)
				• 교통시설: 1,696 → 2,269(증 573)
- 일반공항	2,346	1,967	-378	• 무안: 74 → 240(증 166)
				• 예천: 7 → 50(증 43) • 전주: 8(순증)
				• 김해: 519 → 117(-402)
				• 한국공항공단: 155 → 0(순감)
- 공항안전시설	276	320	44	• 향로관제이설: 123 → 247(증 124)
				• 기타완료사업 등: - 80
○수자원	6,929	8,057	1,127	• 남강댐 1998완료소요: 142 → 0
- 댐	3,598	4,080	481	• 황성댐 원공소요: 71 → 114(증 43)
- 치수	3,331	3,977	646	• 영천도수로: 251 → 308(증 57)
				• 용담댐: 698 → 514(-184)
				• 댐유지보상비: 2,150 → 2,850(증 700)
				• 하천치수: 2,767 → 3,448(증 681)
○대중교통지원	-	200	200	• 공영차고지 150, 환승주차장 50
○산업단지	3,445	3,260	-185	• 공업용수도: 1,307 → 768(-539)
				• 산업단지용자: 670 → 490(-180)
합 계	115,002	120,705	5,703	5% 증(1998 당초예산 대비 20.5% 증가)

- 일반도로는 물류비 절감, 지역균형발전 등을 감안 지원 확대 5,797억원
- 만성적인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도심통과 국도의 대체우회노선 지원 확대 : 2,177억원 → 2,600억원
- 지방도 중 주요 간선망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 1,780억원 → 1,800억원
-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광역도로 지원 강화 : 500억원 → 900억원
- 낙석·산사태 등에 대비하여 도로운영비 증액 : 5,509억원 →

나. 철도 및 지하철

- 경부고속철도는 서울-대구 신선 및 대구-부산 기존선 전철화를 본격 지원 : 5,137억원 → 5,745억원
- 산업물류예로 및 대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한 지역간 간선철도

(도로)

(단위 : 억원)

	1998예산	1999예산(안)	증감	주요내역
○ 고속도로 건설지출	17,979	19,668	1,689	• 총투자 : 35,554 → 39,204
○ 일반국도	33,444	35,576	2,132	
- 국도대체우회도로	2,177	2,600	423	
- 국가지원지방도	1,780	1,800	20	
- 광역도로	500	900	400	
- 국도확장 등	28,987	30,276	1,289	
○ 도로운영	5,509	5,797	288	• 낙석·산사태방지, 시설개량 등
합 계	56,932	61,041	4,109	7.2% 증

(철도 및 지하철)

(단위 : 억원)

	1998예산	1999예산(안)	증감	주요내역
○ 고속철도 건설	5,237	5,820	583	• 경부고속철도 5,745, 기술개발 75
○ 일반철도 건설	13,046	12,340	-706	
- 간선철도 건설	4,140	4,103	-37	• 수원-천안복선 1,300, 전라선개량 1,000, 호남선 복선화 900
- 광역전철망 확충	2,186	2,270	84	• 경인2복선 600, 분당선복선 70, 광역전철망 600
- 철도시설개량	4,066	4,303	237	
- 노후차량 구입	2,654	1,664	-990	
○ 지하철 등 도시철도건설	9,441	10,304	863	
- 지하철건설	7,587	8,310	723	• 서울 3,126, 부산 1,287, 대구 890, 인천 1,048, 광주 1,151, 대전 808
- 지하철운영	1,768	1,945	177	• 부산 1,419, 인천 287, 대구 239
- 기술개발 등	86	50	-36	• 차량표준화 50
합 계	27,724	28,464	740	2.7% 증

및 대도시권 광역전철 건설지원

- 주요 간선 철도망의 수송애로 타개를 위한 지원 : 4,140억원 → 4,103억원
- 대도시권을 연결하는 광역전철망 사업 지원 확대 : 2,186억원 → 2,270억원
- 안전시설 확충 등 철도시설 개량 지원 : 4,066억원 → 4,303억원
-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한 지하철 등 건설 및 운영지원 : 9,441억원 → 1조 304억원
- 지하철 건설비는 완공위주로 연차 소요를 반영 : 7,587억원 → 8,310억원
- 운영비는 초년도 100%, 2차년도 50%, 3년차 25%를 지원하고, 4년차 이후에는 지원을 중단하는 원칙 마련
- 이에 따라 대구지하철 1999년 운영비 지원은 50%(239억원)만 반영
- 부산지하철은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을 추진하고, 아시안 게임이 끝나는 2002년까지 공단운영비를 한시지원 : 1,335억원 → 1,419억원

다. 항만 및 공항

- 부산신항 등 주요 신항의 본격착공소요 및 보상비 반영 : 2,376억원 → 3,617억원
- 부산신항, 인천북항, 목포신외항, 포항신항의 연차소요 및 울산신항 착공소요 지원
- 새만금신항, 보령신항은 투자우선 순위가 낮고 민자추진이 부진하므로 연기
- 기타 부산항, 목포항 등 지역별 거점항만 시설확충 지원 : 4,426억원 → 3,377억원
-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항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 : 9,913억원 → 1조 223억원
-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초 개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적극 지원 : 7,292억원 → 7,936억원
-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반공항 건설 및 확장사업을 지속 지원 : 2,346억원 → 1,967억원
- 양양, 무안, 대구, 김해공항 등 지역거점 공항을 중심으로 지원

< 항만 및 공항 >

(단위 : 억원)

	1998예산	1999예산(안)	증감	주요내역
○ 항만	10,057	9,460	-597	
- 신항만	2,376	3,617	1,241	· 부산신항(2,467), 인천북항(225), 목포신외항(252), 울산신항(103), 포항신항(571),
- 일반항만	7,681	5,843	-1,838	· 부산항(301), 인천항(265), 군산항(638) 등
○ 공항개발	9,913	10,223	310	
- 인천국제공항	7,292	7,936	644	· 공항시설 5,477, 교통시설 2,269
- 일반공항 확충	2,346	1,967	-378	· 양양 690, 무안 240, 김해 117, 대구 145, 여수 179, 포항 85, 예천 50, 울진 17, 전주 3(신규) 등
- 공항안전시설	276	320	44	· 항공보안시설 73, 항로관제시설 247
합 계	19,970	19,683	-287	-1.44%(1998 당초예산대비 22.7% 증가)

- 전주공항은 기본설계비 신규 반영 : 8억원
- 비행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항공보안시설 및 항로관제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 276억원 → 320억원

-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수계 치수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확대 (3,331억원 → 3,977억원)
- 준용하천 중 수해상습지 하천 항구적 개선(신규 800억원)
- 경인운하 민자유치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용지매입비 지원(250억원)

라. 수자원 및 산업단지

- 건설중인 댐 사업은 계획기간 내 완공을 위한 연차소요 지원 (3,598억원 → 4,080억원)
- 보상비는 수공에 총액출자하여 보상책임 강화(2,850억원)
- * 사업별 완공연도: 횡성댐(1999), 밀양댐·영천댐도수로·용담댐(2000), 탐진댐(2001), 영월댐(2003)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지원은 경기불황 및 특별회계 세입재원 감소로 일부 축소조정(3,445억원 → 3,260억원)
- 울산-온산미포, 여천, 인주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신규착수
- 군장, 구미, 동해공업용수의 계획기간 내 건설을 위한 연차소요를 지원하고 아산(Ⅱ) 공업용수 신규계상을

〈 수자원 및 산업단지 〉

(단위 : 억원)

	1998예산	1999예산(안)	증감	주요내역
○ 수자원	6,929	8,057	1,127	
- 댐	3,598	4,080	482	
• 댐건설(6개댐)	1,448	1,207	-241	• 용담 514, 횡성 185, 밀양 140, 영천 308, 탐진 50, 영월 10
• 댐보상비지원	2,150	2,850	700	• 수공총액출자
• 댐타당성조사 등	93	23	-70	• 평화의 댐 시설보수 20
- 치수	3,331	3,977	646	
• 수계치수	1,730	1,915	185	
• 수해상습지	-	800	800	• 준용하천 중 취락지구
• 일반하천개수	1,037	733	-304	• 하천권입토지 보상완료
• 굴포천치수	440	392	-48	• 굴포천분류 141, 경인운하 251
• 기타	124	137	13	• 지하수 개발 조사 등
○ 산업단지	3,445	3,260	-185	
- 진입도로·철도	1,468	2,002	534	• 녹산, 광주평동, 천안 등
- 공업용수도	1,307	768	-539	• 군장 100, 구미 150, 아산Ⅱ 221, 지방산업단지 214 등
- 지방산업단지 용자	370	260	-110	
- 영세중소기업단지 지원	300	230	-70	• 경기시화, 파주, 광주첨단, 경남창원
합 계	10,374	11,317	943	9.1% 증

4. 실업대책 추진 : 5조 6,634억원 → 8조 2,295억원
(45.3%)

- * 국고기준 : 3조 154억원 → 3조 7,077억원(23.0%)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45만명의 실업자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확대 : 1조 44억원 → 2조원
- 중앙부처 시행은 7천억원, 지자체 시행은 1조 3천억원
- 숭가꾸기 등 생산성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정보화 DB 구

축 · 기업인턴사원 지원 등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

- 시중노임을 감안 일당을 3천원 인하(2만 2천원~3만 2천원)하고, 관리감독 체계 개선
-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자활보호자를 위해 특별취로사업 확대 : 400억원 → 1천억원
- 생활보호자 확대지정(116만명 → 173만명) 및 지원의 내실화 : 1조 5,913억원 → 1조 9,499억원

〈 실업대책 추진 〉

(단위 : 억원)

	1998예산	1999예산(안)	증감	주요내역
○ 정부예산	36,405 (30,154)	48,680 (37,077)	12,275 (6,923)	• ()는 국고
- 공공근로사업	10,044 (7,934)	20,000 (15,000)	9,956 (7,066)	• 참가인원 45만명
- 특별취로사업	400 (250)	1,000 (500)	600 (250)	• 참가인원 4만명
- 직업훈련	3,056 (2,933)	2,494 (2,388)	-562 (-550)	• 고용보험기금 포함 훈련인원 32만명 • 고용보험 적용확대로 일반회계 지원 감축
- 신규실업자대책	360	360	-	•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 (4만명, 1,270억원)
- 한시적 생활보호	2,122 (1,611)	4,972 (3,766)	2,850 (2,105)	• 한시적 보호 57만명
- 생계비 보조 지원	1,472 (1,421)	3,682 (2,420)	2,210 (999)	• 13만명, 월 15만원, 12월 • 중고생학비보조 1,000억원 • 결식학생 중식지원 342억원
- 1998 한시대책	5,160	645	-4,515	• 1998추경에 한시적으로 반영된 일용직실업자 월동대책 및 임금채권기금 지원 등은 제외
- 예비비	-	1,000	1,000	
- 기존 생활보호	13,791 (10,435)	14,527 (11,003)	736 (568)	• 기존 생활보호 116만명
○ 비예산	20,229	33,615	13,386	
- 고용보험기금	15,579	25,630	10,051	• 실업급여 1조 5,012억원 • 직업훈련 5,703억원 • 고용안정 4,916억원
- 실업자 대부 등	4,650	7,985	3,335	• 고용안정채권 판매자금 이월분
합 계	56,634	82,295	25,661	45.3% 증

- 생계보호자 11만명(39만명 → 50만명), 자활보호자 46만명(77만명 → 123만명)

- 생계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단가를 3% 인상(월 127천원/인 → 131천원/인)

- 자활보호 13만가구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월 15만원 지원(2,340억원)

○ 실업자 직업훈련은 1998년 수준인 32만명 지원 : 7,553억원 → 8,197억원

- 직업훈련의 수강료(고용촉진훈련 10만원 → 12만원) 및 훈련수당(평균 8만원 → 10만원)을 인상하여 훈련의 내실화 도모

- 여성가장실업자를 위한 특별훈련과정 신설 : 100억원

○ 저소득 실직자 자녀를 위한 특별지원

- 실업자 중고생 자녀 25만명에 대한 학비지원(1천억원)

- 결식학생 12만명 전원에 대해 중식비 지원(342억원)

○ 실업자 대부사업은 1998년 실업자 대부사업재원 중 1999년 사업으로 이월되는 7,535억원 지원

5. 사회복지 증진 : 4조 6,925억원 → 5조 3,525억원 (14.1%)

○ 실업난을 감안, 생활보호대상자 추가 지원(116만명 → 173만명 : 1조 1,188억원 → 1조 8,055억원)

- 생계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원단가 3% 인상(127천원/인·월 → 131천원/인·월)

- 자활보호 13만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월 15만원 지원(2,340억원)

-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자활보호자를 위해 특별취로사업 확대(250억원 → 500억원) 등

○ 경제난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워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 5,763억원 → 6,010억원

- 65세 이상 생활보호노인 및 저소득노인 66만명에 대해 월 2~5만원씩 경로연금 지급(1,501억원)

- 생활보호 장애인에게 월 4만 5천원씩 지급하는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1,2급 전체 생활보호 장애인으로 확대(4만 2천명 → 4만 9천명 : 176억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등 운영비 지원단가를 7% 인상

-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작업장(139개소) 운영비 신규 지원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을 30일 연장(300일 → 330일)

○ 도시자영자까지 국민연금을 확대 적용함에 따른 관리운영비 증액(1,152억원 → 1,225억원)

○ 암센터의 2000년 개원을 위해 잔여 공사비 및 장비비 지원(309억원 → 347억원)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지급대상 확대(4,200명 → 8,100명) 및 향균묘지 조성사업 증액 지원(60억원 → 70억원)

6. 문화 및 관광산업 육성 : 6,227억원 → 6,365억원 (2.2%)

가. 문화관광산업 및 문예진흥 : 3,551억원 → 4,525억원 (27.4%)

○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 지원

-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산업 등에 집중투자(25억원 → 170억원)

- 영화진흥공금 100억원 투입 등 영화·영상산업 지원강화(50억원 → 183억원)

〈 사회복지 증진 〉

(단위 : 억원)

	1998예산	1999예산(안)	증감	주요내역
○생활보호*	11,188	18,055	6,867	
- 생계보호	4,461	6,156	1,695	• 거택보호(5,182), 시설보호(620) 등
- 자활보호생계 지원	398	2,340	1,942	• 13만가구, 15만원, 12월
- 교육보호	567	844	277	• 대상(12만 8천명 → 19만명)
- 의료보호	5,462	7,678	2,216	• 진료비(6,305)
- 특별취로 등	300	1,037	737	• 특별취로(500)
○취약계층 지원	5,763	6,010	247	
- 노인	1,691	1,897	207	• 경로연금(1,501)
- 장애인	1,038	1,133	95	• 장애인시설(569), 생계보조수당(176)
- 보육사업	1,077	1,118	41	• 보육교사 인건비(791)
- 아동	446	465	19	• 아동시설(377)
- 시설지원 등	1,511	1,396	-115	• 시설지원(352), 사회복지전문요원(251), 생업자금융자(350) 등
○의료보험	11,116	11,520	404	
- 지역의료보험	10,528	10,653	124	• 급여비(8,850), 관리비 등(1,803)
- 공·교의료보험	588	867	279	
○국민연금	1,152	1,225	73	• 관리운영비(1,014), 보험료(211)
○보건의료	3,021	2,733	-288	• 암센터 지원 309 → 347 • 민간병원 용자 500 → 100
○국가유공자 지원	10,047	10,323	276	
- 보상금	8,893	9,039	146	• 기본연금(6,385), 부가연금(1,785)
- 보훈병원 등	1,154	1,284	128	• 국비환자진료(671), 향군묘지(70)
○근로자복지 증진 등	915	651	-264	• 산재보험기금 출연(93), 근로복지진흥기금 출연(150) 등
○직업훈련*	2,933	2,383	-550	• 산업인력공단출연(1,354), 고용촉진훈련(499)
○고용안정*	790	625	-165	• 고용관리(147)
합 계	46,925	53,525	6,600	14.1% 증

주 : *는 실업대책비에도 포함

- 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본격 지원(5억원 → 20억원)
- 무공해,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
- 관광지개발 지원(216억원 → 234억원)
- 이천도예, 청도소싸움 등 다양한 지방문화 이벤트 개발(0원 → 40억원)
- 박물관, 문예회관 등의 시설확충을 통하여 문화공간 확충
-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197억원 → 454억원)
- 잠실 올림픽테니스장의 실내 공연장화(0원 → 30억원)
- 지방문예회관(184억원), 공립박물관 건립(90억원), 공공도서관(70억원)
- 전통문화 진흥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전통예술진흥 지원(9억원 → 27억원)
- 문화권 유적정비 및 문화재 보수정비(771억원 → 840억원)
- IMF극복 문화, 미술,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원(0원 → 42억원)

〈 문화 및 관광산업 육성 〉

(단위 : 억원)

	1998예산	1999예산(안)	증감	주요내역
○문화예술진흥	3,551	4,525	974	
- 문예활동지원	823	857	34	• 지방문예회관 건립 170 → 184 • 체육시설 공연장 활용지원 0 → 30 • IMF 불황극복 문화예술지원 0 → 42
- 문화산업육성	129	461	332	• 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5 → 20 • 영화진흥금고 특별지원 0 → 100 • 게임벤처종합지원센터 0 → 113
- 관광진흥	279	325	46	• 관광지 개발 216 → 234 • 도예·소싸움 등 이벤트개발 0 → 40
- 문화예술기관	1,156	1,574	418	• 중앙박물관 건립 197 → 454 • 국립지방박물관 건립 등 197 → 203 • 덕수궁 미술관 분관 0 → 10
- 문화재관리	1,150	1,308	158	• 문화재 보수정비 771 → 840 • 궁·능원 종합정비 151 → 162 • 한국전통문화학교 건립 34 → 60
○체육진흥·청소년육성	2,676	1,840	-836	
- 체육진흥	2,311	1,528	-783	• 월드컵경기장건설비지원 300 → 500 • 부산아시아경기대회 1,286 → 570 • 지방체육시설 확충 150 → 81
- 청소년육성	365	312	-53	• 한국청소년중앙공원 110 → 150 • 지방청소년수련시설 107 → 74
합 계	6,227	6,365	138	2.2% 증

나. 체육 및 건전청소년 육성 지원 : 2,676억원 → 1,840억원(-31.2%)

○ 2002 월드컵경기장(300억원 → 500억원), 부산아시아게임 (1,286억원 → 570억원)

○ 한국청소년 중앙공원(110억원 → 150억원) 건립 및 지방청소년 시설 건립(74억원)

7. 과학기술·정보화 지원 : 3조 5,682억원 → 3조 7,204억원(4.3% 증)

○ 기업경영애로에 따른 민간 R&D 위축을 고려하여 공공부문 R&D 투자를 꾸준히 지속하되, 투자내용의 내실화에 주력 : 2조 7,396억원

- 산학연이 경쟁을 통해 공동활용하는 연구개발비는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은 8.4% 증액지원하되 성과관리를 대폭강화 : 1조 4,182 → 1조 5,374억원

• 국책연구사업비는 산업기술과 핵심원천기술 개발 위주로 전년 대비 9.7% 증액 : 1조 563억원 → 1조 1,587억원

: 핵심전략연구개발 등 특정연구개발사업 확충 : 3,302억원 → 3,471억원

: 중소기업기술혁신 등 산업기술개발 지원 : 4,381억원 → 4,552억원

: 보건·환경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2,276억
 원 → 2,409억원

- 미래 성장잠재력 배양 차원에서 대학중심의 기초과학연구를 전
 년 대비 4.6% 증액지원 : 3,619억원 → 3,787억원
- R&D 예산의 50%를 점하는 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운영체
 제를 근본적으로 쇄신하여 경영개념에 입각한 R&D를 추구 : 1
 조 3,801억원 → 1조 2,023억원

- 출연기관 경영혁신으로 경상비의 20%를 절약
- 연합이사회 소속별로 연구비의 20~50%를 관련부처 정책연
 구비로 계상하고, 정책연구비에 의한 과제수주는 완전경쟁을
 원칙

○ 정보화예산은 21세기를 대비한 선투자 차원에서 전년 대비
 27.3% 증가한 수준으로 대폭 확대 : 7,701억원 → 9,808억원

〈 과학기술·정보화 지원 〉

(단위 : 억원)

	1998예산	1999예산(안)	증감	주요내역
○ 과학기술 연구개발	27,981	27,396	-585	
- 국책과제연구사업	10,563	11,587	1,024	
• 특정연구개발	3,302	3,471	170	- 핵심전략연구개발: 1,340 → 1,650
• 원자력연구개발	304	300	-4	- 선도기술개발: 1,057 → 971
• 산업기술개발	4,381	4,552	171	-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사업
• 정책연구비	-	405	405	- 산업기술자금: 3,781 → 3,819
• 과학기술진흥기금(재특)	300	450	150	- 중소기업기술혁신: 322 → 400
• 보건·해양·국방·농업 기술개발 등	2,276	2,409	133	- 출연(연) 연구비에서 이관
- 기초과학지원	3,619	3,787	168	-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용자
• 기초과학연구지원	1,161	1,458	297	- 보건의료 1,033, 해양기술 251, 건설교통 108, 국방 777 등
• 학술연구조성비	1,000	1,000	-	- 우수연구센터: 424 → 437
• 기타 이공계대학지원 등	1,458	1,329	-129	- 지역연구센터: 80 → 160
- 국립 및 출연연구기관 지원	13,801	12,023	-1,778	- 자유공모과제 지원 등
• 국립연구기관	3,011	2,692	-319	- 이공계대학기자체 첨단화지원 등
• 출연연구기관	10,790	9,331	-1,459	- 농촌진흥청·기술품질원, 환경·건설관련 연구소
○ 정보화 촉진	7,701	9,808	2,107	- KIST 등 55개 출연기관
- 정보통신산업지원	2,085	3,191	1,106	
•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722	1,829	1,107	- ATM 교환기 설치 등
• 정보환경조성사업	502	692	70	- 중소기업 2000년문제 지원 200
• 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 등	861	670	-191	- S/W지원센터 운영 등
- 공공부문 정보화	4,266	5,052	786	- 등기 653, 체신 952, 국세 382, 법무 168, 관세 185, 경찰 200
- 정보화 근로사업	1,350	1,565	215	- 전자도서관, 시설물, 과학기술 DB 구축
합 계	35,682	37,204	1,522	4.3% 증

-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정보통신산업기반 구축: 2,085억원 → 3,191억원
- 기상예보능력 제고를 위한 슈퍼컴퓨터 도입과 특허·항만·등기·체신·국세·경찰 등 공공부문 정보화투자를 대폭 확대: 4,266억원 → 5,052억원
- 대대적인 DB 구축사업 전개(1,350억원 → 1,565억원)로 정보화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Y2K 문제해결(100억원 → 442억원)과 소프트웨어 정품구입 예산을 지원(26억원 → 50억원)

8. 공무원 인건비 : 14조 4,457억원 → 13조 6,292억원 (-5.7%)

- 공무원 인건비는 민간부문의 봉급삭감, 실업확대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급년에 이어 기본급의 10% 상당액을 재삭감
- 체력단련비(본봉의 250%)를 폐지(총보수 대비 -4.5%)
- 총인건비는 1998년 대비 8,165억원 감액 (-5.7%)
 - 봉급추가삭감분 : -6,439억원
 - 정원감축 요인(7,743명) : -2,123억원
 - 기타 증액요인(호봉승급 등): 397억원
- 보수체계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생산성 제고 방향으로 개편
- 국장급 이상(1,500명)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연봉제 실시
 - 직위비중, 업무근로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연봉범위(pay band)를 설정
 - 각 부처의 기관장이 매년 개인별로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연봉범위 내에서 개인별 연봉액을 결정
- 과장급 이하는 고과성적에 따라 상위 50%까지 성과급이 차등 지급(월 기본급의 50~200%)되는 성과상여금(2,800억원 규모) 제도를 실시

- 복잡한 보수체계를 단순화하여 투명성을 제고
- 각종 수당·복리후생비 등 60개 항목을 기본급, 성과급, 기타 수당의 3개 항목으로 단순화
- 1999년중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 관련법 개정 후 2000년부터 시행

9. 교육개혁 : 17조 4,861 → 16조 5,932억원 (-5.1%)

- 그동안 교육투자는 GNP 5% 투자계획(1996~1998)에 따라 양적 확충에 치중하였으나 내년에는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교육의 질적 향상에 중점
-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및 지방의 우수대학 육성을 위한 1차연도 예산 2천억원을 반영하되, 대학운영비, 시설투자 등은 축소
- 대학운영비는 경상경비 축소 차원에서 10% 수준(110억원) 감액하고, 국립대학시설투자도 우선순위에 따라 축소조정(2,647억원 → 2,492억원)
- 산업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우수 전문직업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위해 전문대학을 집중 지원
- 전문대학 다양화·특성화사업(400억원 → 680억원), 재취업·전직교육지원(신규 100억원) 확대
- 초·중등교육부문에서는 교실수업 혁신 등 교육개혁 및 결식학생 생식지원 사업 등은 확대하고, 그동안 집중투자된 실업고 지원은 축소
- 학교수업혁신 교육연구활동지원(25억원 → 37억원), 결식학생 생식지원(23억원 → 80억원)
- 실업제고교확충 및 내실화사업(973억원 → 494억원) 등
- 시도교육청의 인력감축 등 지방교육재정의 구조혁신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상위 10%	11~25%	26~50%	51% 이하
월 기본급의 200%	100%	50%	-

〈 교육개혁 〉

(단위 : 억원)

	1998예산	1999예산(안)	증감	주요내역
○ 초중등교육	147,893	138,898	-8,995	
- 지방교육재정지원	139,009	129,790	-9,219	• 증액교부금 : 3,500억원 → 1,320억원
- 초중등교육환경개선	7,000	7,000	-	• 교육환경개선지원 : 7,000
- 기타 초중등교육	1,884	2,108	224	• 사학연금 : 1,466 → 1,653
				• 결식학생 중식 지원 : 23 → 80
○ 대학교육	11,022	11,931	908	
- 인적자원양성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	1,460	3,013	1,553	•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 : 2,000
- 교육의 내실화 등	7,570	6,767	-803	• 대학의 다양화 · 특성화 : 820 → 825
- 연구능력 강화	1,622	1,819	197	• 사학진흥기금 : 850 → 500
- 대학생 지원	370	332	-38	• 시간강사료단가인상 : 103(18천원 → 23천원)
○ 직업교육	3,504	3,247	-257	• 농어촌학자금융자, 이차보전 등 : 270
- 고교 직업교육 지원	1,205	682	-523	• 실업계 고교확충 내실화 : 973 → 494
- 전문대학 지원	1,660	1,940	280	• 재취업전직교육 : 100
				• 전문대 다양화 · 특성화 : 400 → 680
- 산업대학 지원	639	625	-14	• 이공계연구소, 실습기자재 등 : 599
○ 정보화 교육	450	550	100	• 초중등교육 정보화 : 282 → 306
				• 컴퓨터교실 전산보조원 : 90
○ 국제 · 평생교육	375	240	-135	• 재외한국학교 지원 등 : 365 → 231
○ 기타	11,617	11,066	-551	• 인건비, 기준경비 등 : 10,395 → 10,032
				• 출연기관(8), 병원(9) : 1,222 → 1,034
합 계	174,861	165,932	-8,929	- 5.1 %

- 증액교부금(3,500억원 → 1,320억원) 등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

→ 4,659억원)

• 종합자금사업 신규 반영(150억원) 및 지역특화사업 확대(670 → 930억원)로 농어민과 지자체의 자율권 강화

10. 농어촌 투자 지원 : 8조 5,264억원 → 8조 689억원 (-5.4%)

○ 「42조원 투자」계획으로 집중투자된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대폭 축소하고 투자방향을 재정립 : 4조 2,773억원 → 3조 2,558억원

- 보조의 단계적 용자 전환, 자금의 통합 및 영농컨설팅 활성화로 농업인의 자율 · 책임경영을 유도

• 경지정리사업은 신규 추진물량을 줄여 대폭 감액(7,447억원

○ 농 · 수 · 축 · 임산물의 제값 보장으로 실질소득이 개선되도록 유통부문에 집중 투자 : 4,471억원 → 7,141억원(59.7% 증가)

- 투융자예산 중 유통부문 비중을 (1998) 7% → (1999) 15% → (2002) 30%까지 확대

- 농축산물 유통개혁을 집중적으로 강화 : 3,096억원 → 5,457억원(76.3% 증가)

• 소값파동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부문에 1,300억원을 신규 지원

• 유통정보망, 안전성, 농산물 명품개발 등 소프트웨어 개발도 강화 (85억원)

- 임·수산물의 직거래 확충을 위해 산지종합처리장 등 신규시설 지원을 확대(538억원)

○ 농어촌 부채문제는 경감보다 상환유예를 통한 경영회생에 중점
- 시설정책자금의 상환유예 등 지원을 위해 농협 자금 등 총 1조 6천억원의 자금을 조성, 재정에서 4,603억원을 지원하되, 금리는 현행 유지(6.5%)

(단위 : 억원)

총조성 자금	재정자금	농협	이차보전	국고지원총액
15,750	3,750	12,000	853	4,603

○ 채무상환 및 부채지원 소요 증가에 따라 소득보상지출은 대폭 확대 : 2조 2,974억원 → 3조 2,514억원(41.5% 증가)

〈 농어촌 투자지원 〉

(단위 : 억원)

	1998예산	1999예산(안)	증감	주요내역
○ 농어촌 투융자사업	62,290	48,175	- 14,115	(- 22.7%)
- 생산기반조성	42,773	32,558	- 10,215	
• 농업기반 및 기계화	26,532	19,208	- 7,324	• 경지정리 4,659 • 농업 기계화 2,553
• 농업생산개선지원	7,782	5,750	- 2,032	• 종합자금 지원사업 150 • 지역특화사업 930
• 수산진흥 및 자원조성	2,313	1,908	- 405	• 인공어초 361
• 어업 및 어항개발	2,553	2,416	- 137	• 어항건설 1,537
• 산지지원화	3,593	3,276	- 317	• 조립 및 육림 602
- 영농·영어·양축자금	5,421	924	- 4,497	• 부채상환유예에 전환 지원 • 경영자금 총규모: (5.55조원 → 5.68조원)
- 농수산물 유통개혁지원	4,471	7,141	2,670	• 물류센터 649 • 축산물 유통지원 1,300
- 농어업 인력육성	4,912	3,064	- 1,848	• 전업농육성 957
- 기술개발 및 정보화	2,718	2,554	- 164	• 시험연구 1,118
- 생활환경 개선 등	1,995	1,934	- 61	
○ 소득보상 지출	22,974	32,514	9,540	(41.5%)
- 양곡지원	6,472	9,811	3,339	• 양곡수매지원 1,828 • 양곡기금지원 7,983
- 채무상환	9,550	12,268	2,718	• 비료계정 적자보전 1,450 • 농특채무상환 10,525
- 부채상환유예지원	-	4,603	4,603	총지원 자금(1.6조원)
- 부담경감 등	6,952	5,832	- 1,120	
합 계	85,264	80,689	- 4,575	(- 5.4%)

11. 국방투자의 효율화 : 13조 8천억원 → 13조 7,490억원(-0.4%)

- 국방투자를 구조조정하여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제고
- 전력증강을 위한 방위력개선 분야와 장병 사기·복지분야의 예산을 증가시켜 군의 사기를 진작
- 국방개혁을 통해 인건비 등 운영유지 분야의 비중을 낮춤.

(단위 : 억원, %)

	1998예산	1999예산(안)	증감	증가율
- 국 방 비	138,000	137,490	-510	-0.4
• 방위력개선	40,802	41,403	601	1.5
• 운영유지비	97,198	96,087	-1,111	-1.1

- 국가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장병 사기·복지분야는 증액 지원
- 장병 사기·복지는 근무여건 및 주거환경을 개선
 - 병영현대화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지원 : 1,174억원
 - 하사관 아파트·장교숙소의 신·개축 및 대량보수를 지원 : 1,078억원
 - 군인이파트는 임대, 매입방식도 병행토록 개선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 GOP 등 열악한 복무환경 속에서도 군복무에 충실한 장병에 대한 접적지역 근무수당, 잠수함수당 인상 : 124억원 → 150억원
- 방위력개선 사업은 북한의 전쟁위협에 직접적인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각군의 역점사업 위주로 지원
-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 비중은 1998년 대비 0.5%p 증가 (29.6% → 30.1%)

12. 환경분야 지원 : 1조 7,807억원 → 1조 8,123억원 (1.8% 증가)

- 맑은물 공급 및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 지속(1조 2,315억원 → 1조 2,549억원)
- 한강, 낙동강 등 주요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1조 151억원 → 1조 140억원)
- 한강과 낙동강지역의 하·폐수처리장 등 수질개선사업 계속추진(5,229억원 → 5,390억원)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건설(895억원 → 933억원)
- 중소도시 식수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및 노후관 개량 지원(2,064억원 → 2,211억원)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계속 확충(2,654억원 → 2,677억원)
- 증가하는 쓰레기의 위생처리 및 감량화를 위해 소각시설(24개소 → 31개소)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13개소 → 20개소) 확대
- 영세 재활용산업육성을 위해 재활용시설설치자금 계속 융자(480억원 → 500억원)
- 유해산업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정폐기물처리장 지원 확대(180억원 → 212억원)
- 대기·자연보전분야 투자 및 환경기술연구개발 지원(2,838억원 → 2,897억원)
-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탐방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390억원)
- 환경호르몬 연구, 중국의 산성공해물질측정, G-7 환경공학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201억원)

〈 환경분야 지원 〉

(단위 : 억원)

	1998예산	1999예산(안)	증감	주요내역
○ 수질개선	10,151	10,140	-11	
- 연안하수처리장	895	933	38	• 23개 시설
- 공단하폐수시설	730	549	-181	• 18개시설
- 일반하·폐수처리장, 하수관거 등	8,526	8,658	132	• 일반하·폐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7,861
○ 상수도시설 확충	2,164	2,409	245	
- 상수도개발·개량	2,064	2,211	147	• 지방상수도 개발 494
				• 도서지역식수원개발 153
				•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26
				• 노후관 개량 1,338
-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100	198	98	• 고도정수처리시설 142
○ 폐기물 관리	2,654	2,677	23	
- 폐기물 및 재활용시설	2,275	2,293	18	• 쓰레기 소각 560
				• 쓰레기 매립 253
				• 음식물쓰레기처리장 113
				• 지정폐기물 212
				• 재활용육성자금 500
- 자원재생공사출연	379	384	5	
○ 환경정책 등	2,838	2,897	59	
- 환경기술개발 등	940	843	-97	• G-7연구개발사업 165
				• 환경호르몬 연구조사 25
				• 환경개선자금융자 540
- 종합환경연구단지	162	211	49	
- 대기 및 자연보전	494	605	111	• 국립공원관리사업 390
- 기 타	1,242	1,238	4	• 환특세입 징수비용 499
합 계	17,807	18,123	316	1.8% 증
(수질개선양여금 제외시)	(11,131)	(11,409)	(278)	(2.5% 증)

13. 기타 주요사항

- 고용창출효과가 큰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인수 지원 : 1조 1천억원 → 1조원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연금(약 11만명 대상)은 사회전반의 임금하락 추세를 감안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원수준 동결 : 8,893억원 → 9,039억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운영비를 7% 인상 지원 : 1,227억원 → 1,381억원
- 국내전시공간의 대폭 확충을 위해 수도권에 대규모 무역전시장 신규건립 추진 : 50억원

- 중소기업의 컴퓨터 2000년문제(Y2K) 해결 지원(100억원 → 442억원) 및 정부의 소프트웨어 정품구입 선도를 위한 관련예산 확대(26억원 → 50억원)
- 우리 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재경부 등 6개부처에 외신대변인제를 신설하는 등 소요예산 반영 : 0원 → 16억원
- 전자주민카드 경신사업은 막대한 예산소요(6,547억원) 및 개인신상정보 보호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
- IMF 체제 이후 증가하고 있는 채소자의 인권신장을 위해 교정시설 3개소(시화, 충주, 안양) 신규착공 및 수용경비 지원 확대 : 573억원 → 698억원

14. 공공부문 개혁

- 출연연구기관(59개) 경영개혁 -960억원
- 전 출연기관에 대해 경영개혁 차원에서 감량화하여 인건비·경상비의 20% 수준을 감액하여 편성
- 정부 출연·위탁기관(133개) 구조조정 -2,500억원
- 설립목적 달성, 여건변화로 중요성이 감소된 27개 기관은 폐지·통폐합 또는 민영화하고 나머지 기관은 조직 및 인력을 정비하여 20~40% 수준 감액
- 보조기관(210개)에 대한 보조금 정비 -340억원
- 보조기관 성격,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보조중단 또는 일몰제 적용
• 41개 기관 보조중단, 24개 기관 일몰제(1~2년) 적용
• 계속지원기관의 구조조정 : 20% 범위 내 감액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에 대한 보조는 국민운동지원 사업비(총액) 150억원을 활용하여 사업의 내용에 따라 차등지원

- 정부기능의 민간위탁(outsourcing) 확대
- 전산업무, 시설관리 등 민간수행이 가능한 67개사업은 민간 위탁하여 1999~2000년간 3천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절감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통폐합 -100억원
(자산매각수입 포함시 -1,500억원)
- 각 부처 산하 23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10개 기관으로 통폐합하여 497명 인력감축 및 연 200억원 수준 예산절감(1999 : 100억원)
→ 공공개혁으로 매년 3,900억원 예산절감 → 인건비 포함시 1조 2,462억원

15. 예산편성방식의 개선

- 수요자 의견수렴의 제도화
- 예산요구 단계부터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요구시 수혜자의 평가 보고서를 함께 제출
- 중앙·지방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 지방의 요구사항 수렴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
- 소비자대표, 학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예산자문회의를 운영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 예산편성·집행·평가의 환류기능 강화
- 30대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를 1999 예산에 반영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 23개 → 10개(병설 5개 별도) 등
- 새마을, 가덕도 등 100여개 재정사업 현장을 방문, 점검(1998. 4. 15~6. 10)결과를 1999 예산에 반영
- 예산사용기관의 자율성을 확대
- 경상사업비와 일반사업비를 기본사업비로 통합하고 세부사업 내역을 집행기관이 자율 결정

조
제
안
별

- 소요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는 총액계상사업을 대폭 확대 : 18개 사업 4조 4천억원 → 39개 사업 6조 6천억원
- 용지보상비, 일반행정경비 중 일정액에 대한 예산의 이월을 허용하여 예산집행과정의 신속성 부여
- 예산회계법 개정 추진중
- 공공사업 입찰제도 개선 및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 100억원 이상의 정부공사는 최저낙찰 수준을 예정가격의 70% → 75%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일정규모(예 :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를 도입

- 대법원 : 3억원(차량감축 - 77대)
- 병무청 : 282억원 절감(지방행정관서에 대한 병무행정 위임업무 폐지)
- 행정자치부 : 11억원(자발적 직제축소 - 51명)
- 관세청 : 4억원 절감(자발적 직제축소 - 17명 등)
- 조달청 : 1억 5천만원(일용직 고용원 감축)
- 국방부 : 8천만원(하사관 교육방법 개선)
- 예산절감 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강화방안 마련을 추진
- 운영근거 : 세출예산집행지침 → 예산회계법
- 1인당 한도 확대(현행 기본급의 200%) 및 성과급 재원 범위 확대(현행 절약액의 30~100%) 등

〈 참고자료 〉

1. 주요 제도개선 사항

가. 인센티브 제고 방안

- 성과상여금 제도 마련
- 과장급 이하 전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 제도를 새로이 도입(국장급 이상은 연봉제 실시)
- 평가방법 : 현재 시범 운용중인 점수제 평가방법을 보완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
상급자 평가 → 동급자 · 하급자 등 쌍방향평가 추가
- 지급방법 : 평가결과에 따라 연말에 1회 차등지급

상위 10%	11~25%	26~50%	51% 이하
월 기본급의 200%	100%	50%	-

-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의 활성화
- 각 부처의 자발적인 예산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 도입된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에 의하여 1999년 예산은 6개부처에서 300억원을 절감

나. 민간보조금의 정비계획

- 정비 내용
- 1998년 : 210개 기관 → 2001년 : 145개 기관(-65개, -31%)
1999년 중단 : 41개, 2000년 중단 : 12개, 2001년 중단 : 12개
- 보조금예산 : 1998년 2,380억원 → 1999년 2,040억원(-340억원, -14%)
- 설립목적 달성기관, 유사·중복기능 수행기관, 재정자립 가능 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은 정비
- 재정자립도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 최장 2000년까지 지원
- 예 : 가족계획협회, 식생활개선단체, 스카우트단체, 각종 레크리에이션단체 등
- 소외·취약계층지원기관, 국가장려기능 수행기관 등은 차질 없이 지원
- 경제난극복, 불우계층지원 등 관련분야는 사업성격에 따라 적정 지원규모를 반영하되, 고تب분담과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분야는 일부 감축지원

- 예 : 보훈단체, 장애인·여성·노인단체, 법률구조단체 등
-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지방국민운동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식 개편
 - 종래 정부가 기관별로 운영비보조를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민간위원회의 사업별심사 후 선정된 사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 '민간운동지원' 비목의 예산을 총액 계상
 - 지원대상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개 국민운동단체의 추진사업뿐 아니라 민간시민·사회단체들의 지방국민운동사업 및 민간자율에 의한 시민활동지원 사업을 포함
 - 현재 국회 계류중인 '민간운동지원에관한법률(안)'의 입법화를 전제
- 우선순위에 입각한 신규사업 선정을 위해 일정 규모(예 :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 타당성조사 단계를 도입
 - 소요예산율 예산청에 계상, 조사는 국내·외 전문기관 등이 수행
 - 부실한 타당성조사에 대하여는 수주 참여 제한 등 제재
 - 1994~1998년중 타당성 조사(총44건, 조사비 288억원) 결과·조사 완료된 33건 중 율령공항을 제외한 32건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결론
-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예비 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 및 설계→보상→공사의 순으로 반영
- 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하여 제도화

다.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

- 입찰과정의 경쟁촉진으로 담합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
 - 정부공사는 낙찰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 및 예산을 절감
 - 20개 사업 총사업비(2조 4,597억원) 중 2,336억원을 삭감
 - 정부투자기관 공사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로 개선
 - 제한경쟁시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과 사전 협의 의무화
 - 50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내용을 조달청이 사전 검토
 - 낙찰률(설계가격 대비) : 조달청 공사 76%, 투자기관 공사 91% 수준
 - 1999년 예산편성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절약
- 1999년 1월 1일부터 입찰제도를 보완 시행
 - 공사비가 예정가격의 75%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 입찰담합을 방지하면서도 공사품질도 아울러 확보

2. 1999년 재정 사업의 효과

	단위	1998전망	1999예산(안)
○ 경상 GDP	조원	429	447
○ 주 택			
- 보급률	%	92.0	93.7
- 신규건설	천호	500	500
○ 전화보급대수	대/100인당	43.0	43.0
○ 상수도 보급			
- 보급률	%	85.3	86.1
- 급수량	l/1일 1인당	420	426
○ 도로능력(2차선 기준)			
- 국도	km	24,013	24,943
- 고속도로	km	9,079	9,693
○ 도로포장			
- 국도 포장률	%	97.9	98.0
- 지방도 포장률	%	81	81
○ 지하철 운송분담률			
- 서울	%	30.8	32.0
- 부산	%	9.8	15.0
○ 공항 여객처리 능력	만명/년	8,222	8,222
○ 항만 하역능력	백만톤/년	409	472
○ 철도 연장	km	6,610	6,610
○ 평균수명	세	74.3	74.6
- 노령화 지수	%(65세 이상/14세 이하)	29.9	31.4
○ 사회보장 및 안전			
- 의료보장률	%	100	100
- 국민연금 가입자수	천명	16,239	16,195
- 산업재해율	%(재해자수/근로자수)	0.77	0.72
○ 문화 및 교육여건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명/학급당	34.8	35.2
- 초중등학교 운영비 현실화	%	86.4	89.5
- 국립대 시설보유율	%	69.5	73.0
- 공공도서관	개소	370	390
• 인구만명당 좌석수	석	47.3	49.8
• 인구만명당 장서수	권	3,832	4,315
○ 농수산 개발			
-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 (착수기준)	%	91	92

3.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역

가. 기능별 내역

(단위 : 억원, %)

기능별	1998예산	1999예산(안)		증감
		구성비	구성비	
1. 일반행정	71,801	9.5	75,865	4,064
○ 일반행정	25,829	3.4	30,758	4,929
○ 입법 및 선거관계	3,390	0.5	2,548	-842
○ 사법 및 경찰	45,582	5.6	42,559	-23
2. 경제개발	203,113	26.9	200,251	-2,862
○ 농수산개발	35,976	4.8	36,648	672
○ 국토자원보존개발	9,860	1.3	11,597	1,737
○ 중화학공업 및 상공지원	34,549	4.6	26,690	-7,859
○ 전력 및 동력	6	-	5	-1
○ 수송 및 통신	105,311	13.9	107,716	2,405
○ 과학기술	17,411	2.3	17,595	184
3. 사회개발	69,058	9.1	85,099	16,041
○ 문화 및 체육	7,506	1.0	7,497	-9
○ 인력개발 및 인구대책	2,830	0.4	5,571	2,741
○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12,047	1.6	10,481	-1,566
○ 사회복지	45,761	6.0	58,102	12,341
○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914	0.1	3,448	2,534
4. 교육비	120,564	16.0	110,731	-9,833
○ 교부금	93,240	12.3	82,874	-10,366
○ 일반경비	27,324	3.7	27,857	533
5. 방위비	143,755	19.0	143,368	-387
6. 지방재정교부금	70,392	9.3	66,469	-3,923
7. 채무상환 및 기타	2,455	0.3	25,106	22,651
8. 예비비	28,700	3.8	16,267	-12,433
9. 재정융자 지원	45,989	6.1	82,544	36,555
합 계	755,829	100.0	805,700	49,871

나. 소관별 내역

(단위 : 억원, %)

소관	1998예산	1999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55,829	805,700	49,871	6.6
○ 대통령실	332	339	7	2.2
○ 대통령 경호실	353	363	10	2.7
○ 국회	1,589	1,651	62	3.9
○ 대법원	3,093	3,230	137	4.4
○ 국가안전기획부	2,098	1,963	-135	-6.4
○ 국가안전보장회의	2	7	5	233.8
○ 감사원	382	399	17	4.5
○ 헌법재판소	85	83	-2	-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801	897	-904	-50.2
○ 국무총리실	524	769	245	46.8
○ 재정경제부	63,029	115,300	52,271	82.9
- 일반경비	61,992	115,300	53,308	86.0
- 예비비	1,037	-	-1,037	-100.0
○ 통일부	541	488	-53	-9.9
○ 외교통상부	5,867	5,532	-335	-5.7
○ 법무부	8,053	8,110	57	0.7
○ 행정자치부	74,058	88,651	14,593	19.7
- 지방재정교부금	63,392	66,469	3,077	4.9
- 일반경비	10,666	22,182	11,516	108.0
○ 국방부	138,000	137,490	510	-0.4
○ 교육부	120,564	110,731	-9,833	-8.2
- 교육재정교부금	93,241	82,874	-10,367	-11.1
- 일반경비	27,323	27,857	534	2.0
○ 문화관광부	7,506	7,497	-9	-0.1
○ 농림부	30,852	31,744	892	2.9
○ 산업자원부	10,365	10,345	-20	-0.2
○ 정보통신부	2,991	2,659	-332	-11.1
○ 보건복지부	31,127	38,639	7,512	24.1

소관	1998예산	1999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 환경부	3,336	3,311	-25	-0.7
○ 노동부	4,797	5,378	581	12.1
○ 건설교통부	104,183	108,515	4,332	4.2
○ 해양수산부	12,556	11,723	-833	-6.6
○ 과학기술부	9,492	9,607	115	1.2
○ 법제처	89	83	-6	-6.9
○ 국가보훈처	10,554	10,787	233	2.2
○ 기획예산위원회	(72)	64	64	(- 12.5)
○ 여성특별위원회	122	143	21	17.0
○ 공정거래위원회	164	170	6	4.0
○ 예산청	27,716	16,382	- 11,334	-40.9
- 일반 경비	53	115	62	116.0
- 예비비	27,662	16,267	- 11,395	-41.2
○ 국세청	5,859	5,844	- 14	-0.2
○ 관세청	1,652	1,644	- 8	-0.5
○ 통계청	520	635	115	22.3
○ 경찰청	32,711	32,550	- 161	-0.5
○ 병무청	1,590	1,422	- 168	- 10.6
○ 농촌진흥청	2,188	2,148	- 40	- 1.8
○ 산림청	2,167	4,318	2,151	99.3
○ 중소기업청	16,671	16,613	- 58	-0.3
○ 철도청	3,997	3,469	- 528	- 13.2
○ 해양경찰청	2,693	2,926	233	8.6
○ 기상청	508	562	54	10.6
○ 식품의약품안전청	333	518	185	55.5
○ 민주평통자문회의	11	0	- 10	- 100.0
○ 내무부	7,151	0	- 7,151	- 100.0
○ 총무처	1,479	0	- 1,479	- 100.0
○ 공보처	64	0	- 63	- 100.0
○ 정무1장관실	4	0	- 4	- 100.0
○ 정무2장관실	12	0	- 12	- 100.0

주 : 기획예산위원회 ()안은 조직신설에 따른 예비비 사용액

4. 주요 재정 투자사업 (신규, 계속, 완공사업 예시)

가. 주요 신규사업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1999예산안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	1999~2002	3,645	48
충남중부권 광역상수도	1999~2002	1,974	25
광양(Ⅲ)공업용수도	1999~2003	2,524	57
아산(Ⅰ)공업용수도	1999~2001	815	221
수해상습지 개선	1999~2003	6,587	800
주민임대주택 건설	1999~2002	8,100	527
전주공항	1999~2003	1,110	8
환승주차장 건설	1999~2002	-	50
천안-조치원 전철화	1999~2002	857	20
인천항 연안카페리부두	1999~2001	218	50
군산항 국제여객부두	1999~2001	208	10
울산항 6부두 CY 배후도로	1999~2001	113	21
제주 어항구 방파제	1999~2001	65	10
원도항 어선물양장	1999~2001	190	20
울산신항 방파제	1999~2011	130	30
섬유산업 지원	1999~2003	3,670	835
수도권 무역전시장	1999~2003	627(잠정)	50
슈퍼컴퓨터 도입	1999~2004	315	37
시화직업훈련소	1999~2002	552	14

나. 주요 계속사업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1997까지 기투자	1998예산	1999예산안	증감
경부고속철도 건설(1단계) (총투자규모)	1992~2004	57,320 (127,377)	16,211 (28,679)	4,770 (12,966)	5,555 (19,500)	785 (6,534)
수원-천안 복복선	1990~2002	8,674	1,529	1,125	1,300	175
전라선 개량	1988~2003	10,882	3,705	1,140	1,000	-140
송정리-목포 복선	1991~2002	4,433	1,136	1,200	900	-300
경인복복선 전철	1991~2001	5,993	2,965	830	600	-230
광역전철망 사업	1993~2008	19,334	471	500	600	100
부산-울산 복선전철	1993~2005	5,832	159	80	-	-80
시흥 전동차기지	1992~2000	2,582	897	450	600	150
동부 전동차기지	1996~2000	1,718	437	256	400	144
분당선 전철	1994~2001	4,890	628	70	70	-
충북선 전철화	1997~2002	2,636	21	75	200	125
중앙선 복선전철	1993~2005	10,055	103	109	-	-109
원주-강릉간 철도건설	1997~2003	18,652	48	40	-	-40
장항선 개량	1997~2005	10,029	57	129	130	1
천안-온양 복선전철	1997~2003	1,946	9	19	24	5
경춘선 복선전철	1997~2006	12,047	48	68	270	202
영동선 철도이설	1998~2005	4,607	-	15	38	23
횡성댐 건설	1990~2000	622	366	71	185	161
밀양댐 건설	1990~2000	1,115	741	140	140	-
용담댐 건설	1990~2000	3,092	1,398	698	514	-184
영천도수로 건설	1990~2000	2,610	1,944	251	308	57
탐진댐 건설	1996~2001	1,311	86	50	50	-
영월댐 건설	1996~2003	2,919	50	2	10	8
굴포천 치수	1990~1999	3,170	1,407	440	392	-48
대청댐계통(Ⅱ) 광역상수도	1995~2000	4,812	494	539	983	444
동화댐계통 광역상수도	1995~2000	836	210	154	189	35
포항권계통 광역상수도	1995~2000	862	330	122	164	42
남강댐계통 광역상수도	1995~2000	1,768	275	230	393	163
제주도 광역상수도	1994~2000	1,310	456	262	304	52
수도권(Ⅰ) 복선화	1995~2000	523	137	52	200	148
원주권계통 광역상수도	1995~2001	1,100	21	33	64	31
밀양댐계통 광역상수도	1994~2000	1,954	568	249	355	106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1997까지 기투자	1998예산	1999예산안	증감
전주권 2차 광역상수도	1992~2000	1,175	67	56	106	50
울산권계통 광역상수도	1995~2001	1,326	100	46	288	242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1994~2000	1,477	697	353	229	- 124
전남서부 광역상수도	1995~2001	1,092	-	25	63	38
군장(1) 공업용수도	1998~2001	1,277	12	32	100	68
구미 공업용수도	1994~2001	616	11	11	150	139
기간국도 5차건설	1995~2000	19,439	6,086	3,655	4,701	1,046
산업지원국도 건설	1996~2001	26,937	6,184	4,280	4,135	- 145
기간국도 6차건설	1997~2002	27,683	201	1,040	2,994	1,954
산업지원도로	1995~2004	12,932	1,609	1,272	1,772	500
1차개발촉진지구 지원	1995~2001	4,088	489	550	650	100
2차개발촉진지구 지원	1998~2002	3,350	-	80	140	60
서울지하철(2단계 2차)	1994~2000	14,370	6,985	2,707	3,126	419
부산지하철	1991~2002	18,609	7,413	1,306	1,287	- 19
대구지하철	1996~2002	9,455	1,541	443	890	447
광주 지하철	1996~2004	7,533	588	1,099	1,151	52
대전 지하철	1996~2003	7,730	590	778	808	30
인천 국제공항 건설	1992~2000	28,585	12,912	7,510	7,878	368
양양공항	1994~2001	3,567	774	684	690	6
무안공항	1997~2002	2,662	17	74	240	166
여수공항	1995~2002	1,994	228	182	179	- 3
대구공항	1995~2001	838	275	143	145	2
김해공항 국제터미널	1997~2003	2,846	150	176	117	- 59
포항공항	1997~2002	633	5	10	85	75
울진공항	1996~2001	1,364	57	53	17	- 36
예천공항	1997~2001	343	3	7	50	43
북한화물터미널 건설 (중부·영남·호남권)	1998~2006	8,842	-	89	150	61
백제문화권 개발	1994~2001	2,235	1,227	252	219	- 33
전주권종합개발 2단계	1997~2001	1,061	396	141	116	- 25
부산항 건설	1995~2001	5,449	3,901	674	306	- 368
인천항 건설	1989~2000	3,374	416	255	265	9
광양항 건설	1987~2001	3,740	1,588	315	339	- 24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1997까지 기투자	1998예산	1999예산안	증감
아산항 건설	1989~2001	6,104	2,667	456	305	- 151
군산항 건설	1979~2001	6,475	685	737	638	- 99
목포항 건설	1983~2000	2,517	1,465	153	187	- 34
울산항 건설	1980~2000	2,701	1,589	389	137	- 252
제주지역 항만건설	1979~2001	3,097	280	334	300	- 34
부산신항	1995~2011	17,627	1,267	1,335	2,567	1,132
인천북항	1995~2011	2,368	70	206	225	19
목포신외항	1993~2011	3,467	317	385	252	- 133
울산신항	1995~2011	14,890	103	60	103	43
포항 영일만신항	1992~2011	6,891	220	360	571	211
새만금신항	1995~2011	3,993	55	-	-	-
보령신항	1992~2011	1,011	33	30	-	- 30
금강Ⅱ 지구 대단위농업개발	1989~2004	4,159	1,046	300	270	- 30
미호천Ⅱ 지구 대단위농업개발	1989~2000	1,648	701	212	192	- 20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	1991~2001	2,224	1,039	200	180	- 20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 (농지관리기금)	1995~2003	3,280	272	10 (250)	50 (150)	40 (- 100)
새만금방조제 축조 (농지관리기금)	1991~2001	14,874	7,001	2,430 (1,150)	1,630 (670)	- 800 (- 480)
동화지구 대규모 용수개발	1987~2000	1,506	991	169	168	- 1
금오공대 이전	1995~2004	1,075	82	52	71	19
대전산업대 이전	1990~2000	1,006	736	173	116	- 57
밀양산업대 이전	1996~2005	708	40	23	40	17
국립특수전문대 설립	1998~2000	469	-	40	67	27
국립중앙박물관 신축	1993~2003	3,291	259	196	454	258
월드컵경기장 건설	1998~2001	1,851	-	300	500	200
기술교육대학 확대개편	1995~2000	302	109	42	66	24
자전거도로 정비	1998~2002	7,000	-	50	150	100
재해위험지구 정비	1998~2007	7,648	-	85	150	65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1995~2004	2,040	675	150	150	-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1992~2000	2,007	920	180	212	32
부산종합법원	1995~2001	1,110	371	132	168	36
사법연수원	1992~2002	1,407	463	120	93	- 27



다. 주요 공공사업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1997까지 기투자	1998예산	1999예산안	증감
수도권(V)광역상수도	1992~1999	10,454	6,077	2,799	1,009	- 1,790
인천-서인천간 고속도로	1994~1999	1,546	770	450	326	- 124
청원-비룡간 고속도로	1993~1999	3,734	2,142	1,430	162	- 1,268
이현-성서간 고속도로	1996~1999	366	95	130	140	10
기간국도 4차 건설	1994~1999	15,985	9,146	2,963	3,676	713
인천지하철	1993~1999	6,321	4,019	1,254	1,048	- 206
성주지구 대규모 용수개발	1987~1999	1,292	1,008	159	125	- 34
인천항 전력조명시설	1996~1999	142	33	42	67	25
목포북항 가호안	1991~1999	153	84	29	40	11
동해항 건설	1990~1999	1,127	826	231	70	- 161
성산포항 방파제	1983~1999	316	258	34	24	- 10
대천항 방파제	1996~1999	75	29	13	33	20
구룡포항 가호안, 물양장	1996~1999	45	21	11	13	2
광양항 가호안	1995~1999	633	393	178	62	- 116
수영/광안대로 지원	1992~1999	3,022	1,778	800	444	- 356
광양항 인입철도	1993~1999	608	464	100	44	- 56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1~1999	591	291	99	200	101
국립암센터 건립	1991~1999	1,574	915	312	347	35

5. 주요 재산지표

(단위 : 억원, %)

	1995	1996	1997	1998			1999 예산(안)
				당초	1회추경	2회추경	
1. GDP 증가율							
○ 당초(경상)	12.9	12.3	11.3	10.8	7.7	3.2	4.2
○ 실적(경상)	8.9	7.1	5.5	-	-	-	-
2. 일반회계 증가율 (당초예산기준)	16.7	16.2	16.6	4.0	2.0	11.8	6.6
3. 일반회계/GDP	14.7	15.4	16.1	14.9	15.2	17.4	18.0
4. 일반회계+재정용자 증가율	15.1	14.8	13.4	5.7	3.8	13.1	6.2
5. 세계잉여금	4,065	7,187	4,147	-	-	-	-
6. 추경규모 (일반회계)	18,932	8,607	-8,722	-	-13,632	66,825	-

※GNP 대비 통합재정수지의 국제비교(예산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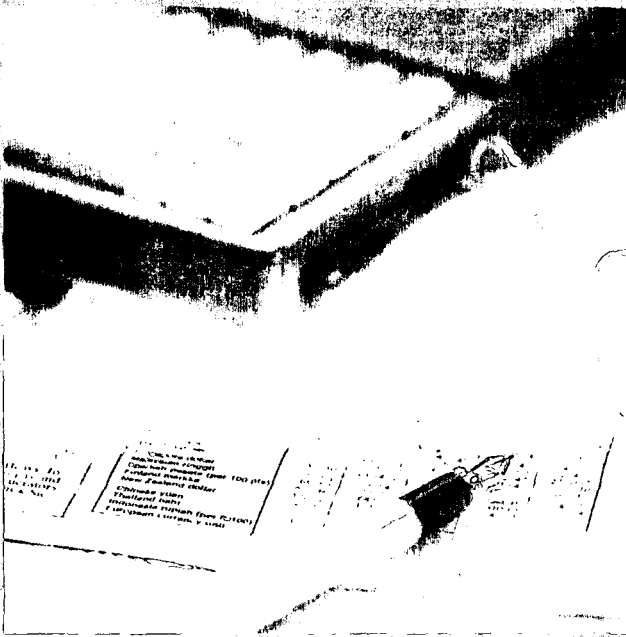
한국(1998)	미국(1996)	일본(1993)	독일(1995)	프랑스(1995)	영국(1995)
-5.0	-1.5	-1.6	-1.9	-6.4	-5.3

자료 : IMF, 「1996년 정부재정통계집」.

※재정규모의 국제비교(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GDP)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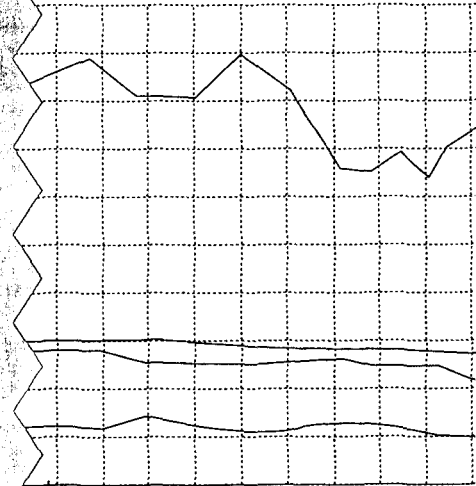
한국(1997실적)	미국(1995)	독일(1993)	프랑스(1994)	영국(1993)
22.1	22.9	37.7	43.5	41.6



재정통계

OECD 회원국의 법인소득세 비교(II)

1. OECD 국가들의 법인소득세 한계세율 비교(1997)
2. OECD 국가들의 건물 및 자재에 대한 세법상 감가상각제도 비교(1997)
3. OECD 국가들의 기계/설비에 대한 세법상 감가상각제도 비교(1997)



1. OECD 국가들의 법인소득세 한계세율 비교 (1997)

	지방정부	중앙정부	합계
호주	-	36	36
오스트리아	-	34	34
벨기에	0	40.17	40.17
캐나다	14	29.12	43.12
체코	-	39	39
덴마크	-	34	34
핀란드	-	28	28
프랑스	-	33/33	
독일	-	45/30	45/30
그리스	-	40/35	40/35
헝가리	-	18	18
아이슬란드	-	33	33
아일랜드	-	38	38
이탈리아	16.2	36	52.2
일본	-	37.5	-
한국	3.15	28	31.15
룩셈부르크	9.09	33	39.09
멕시코	-	34	34
네덜란드	-	35	35
뉴질랜드	-	33	33
노르웨이	7.25	20.75	28
폴란드	-	38	38
포르투갈	3.6	36	39.6
스페인	-	35.002625	35.002625
스웨덴	-	28	28
스위스	30(취리히)	9.8	39.8
터키	-	25	25
영국	-	33	33
미국	6.9	35	39.5

자료 : OECD, *The OECD Tax Data Base*, 1998.

2. OECD 국가들의 건물 및 자재에 대한 세법상 감가상각제도 비교 (1997)

	건물					자재 (재고자산)
	1차			2차		
	정률법 또는 이중체감법	상각률	연수	상각률	연수	
호주	SL	2.5 or 4	40			F
오스트리아	SL	2-4				F/LC
벨기에	DB/SL	6		3		F/LC
캐나다	DB	4	UFD			F
체코	SL or DB	-	45			F
덴마크	SL	6	10	2	20	F
핀란드	DB	7/4	UFD			F
프랑스	SL	2-5	50-20			F
독일	SL or DB	유동적	50/25	-	-	
그리스	SL	5-12	20-8			F/LC
헝가리	SL	2-3-6	50-33-17	-	-	F/L
아이슬란드	SL	1-3				F
아일랜드	SL	4				F
이탈리아	SL or DB	유동적	UFD			F/LC
일본	SL or DB					
한국	SL	2-6.7	50-15			
룩셈부르크	SL	2-4	40			F/LC
멕시코	SL	5	20	-	-	
네덜란드	SL	2-3	50-33	-	-	F/L
뉴질랜드	DB/SL	4/3	50	-	-	F
노르웨이	DB	5/2	UFD			F
폴란드	SL	2.5	40	-	-	F/L
포르투갈	SL	2	50			F/L
스페인	SL	3/4				F/C
스웨덴	SL	3.3	30	-	-	F/L
스위스	SL or DB	2/4	50/25			F/L
터키	DB/SL	12-8-6-4/ 5-4-3-2	50/25 50	2	-	
영국	SL	4	25	-	-	F
미국	SL	2.564	39	-	-	F/L

주 : 감가상각법 DB 체감법
 SL 정률법
 DB/SL 체감법에서 정률법으로 변경허용
 SL or DB 체감법/정률법 중 선택 (변경불가)
 UFD 완전상각이 될 때까지
 재고자산 L LIFO
 F FIFO
 FI FIFO (구제제도 포함)
 F/L FIFO 또는 LIFO (일반적으로 LIFO가 선택됨)
 F/LC FIFO: (특정경우에 한하여 LIFO도 허용)

3. OECD 국가들의 기계/설비에 대한 세법상 감가상각제도 비교(1997)

	1차			2차	
	정률법 또는 이중체감법	상각률	연수	상각률	연수
호주	SL or DB	유동적	최고 14년		
오스트리아	SL	20			
벨기에	DB	40		SL	20
캐나다	DB	30	UFD		
체코	SL & DB	-	최고 15년		
덴마크	DB	30		-	-
핀란드	DB	30	UFD		
프랑스	DB/SL	25-12.5	10-20		
독일	SL or DB	유동적/30	유동적	-	-
그리스	SL	4-20	25-5		
헝가리	SL	33-20-14.5	3-5-7	-	-
아이슬란드	SL	5/15-10/20			
아일랜드	SL	15			
이탈리아	SL or DB	유동적	UFD		
일본	SL or DB				
한국	SL/DB	5-33.3	20-3		
룩셈부르크	SL or DB				
멕시코	SL	유동적	유동적	-	-
네덜란드	SL or DB	10/15-20/30	10-3	-	-
뉴질랜드	DB/SL	14.4/9.6	15.5	-	-
노르웨이	DB	유동적			
폴란드	SL or DB	유동적	2.5-20	-	-
포르투갈	SL or DB	20	UFD		
스페인	SL or DB	15			
스웨덴	DB/SL	30/20	UFD/5	-	-
스위스	SL or DB	15/30	UFD		
터키	DB/SL	40/20	5년	-	-
영국	DB	6/25	UFD	-	-
미국	DB/SL	유동적		SL	

주 : DB 체감법
 SL 정률법
 DB/SL 체감법에서 정률법으로 변경허용
 SL or DB 체감법/정률법 중 선택 (변경불가)
 UFD 완전상각이 될 때까지